

제 2 편 歷史와 遺跡

士公

武桐

統民

出

市

齊濟

印

村

山

山

山

山

山

山

山

山

山

山

山

山

山

山

山

제 1 장 歷史와 設村

牛島에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것은 朝鮮朝 憲宗 9년(1843) 경부터 라고 생각된다. 물론 그 이전에도 사람들이 왕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牛島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그리고 肅宗 23년(1679) 牧場이 설치되면서부터는 國馬를 管理, 飼育하기 위해 사람들이 왕래가 빈번했던 곳이다. 그러나 純祖 23년(1823)부터는 濟州 백성들이 계속하여 牛島의 開墾을 朝廷에 요청하게 되었고, 또 憲宗 8년(1842)에는 조정으로부터 승인을 받기에 이른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들어가 開墾하기 시작한 것은 牛島에서 放牧하던 馬匹을 다른 목장에로의 搬出이 마무리된 憲宗 9년 봄부터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牧場의 設置로부터 開墾許可의 要請, 馬匹의 搬出過程 및 開墾과 入住에 이르는 과정을 理解의 편의상 몇 개의 段落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제 1 절 牧場의 設置

牛島에 목장¹⁾이 설치된 것은 朝鮮朝 肅宗 23년 (1697. 丁丑)의 일이다. 그것은 李衡祥의 《南宦博物》〈誌島〉條에,

1) 孝宗 4년(1653)에 李元鎮이 간행한 《耽羅誌》〈濟州牧 牧場〉條에는 “羔圉”(註, 牛島飛揚島俱有之)라 하여, 牛島와 飛揚島에서 “羔圉”(염소?)를 사육했었음을 엿볼 수 있다.



牛島點馬(壬午七月十三日中軍 旌義縣監 牧子 保人并二十三名 馬二百六十二匹)

卯有牛島形如臥牛，在旌義境別防水山兩鎮之間，無樹木只產楮，今丁丑年新設牧場，周五十里水路十里，波極險難渡，…以故人無往者，守令教授幕僚史民交謁更諫，余以新設牧場，不可不見過歷入，…

이라 한 내용에서 엿볼 수 있다. 즉 “卯方(동쪽)에는 牛島가 있는데, 모양은 ‘누운 소’(臥牛)와 같고 旌義 경계의 別防·水山 兩鎮 사이에 있다. 樹木은 없고 오직 닥나무가 나는데, 肅宗(肅宗) 丁丑年에 목장을 신설하였다. 둘레가 50

리이고 수로는 10리이며, 과도가 매우 험하여 건너기가 어렵다. …지금까지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으므로, 守令·敎授·幕僚·吏民들이 교대로 아뢰며 못들어 가게 諫하였으나 그는 몸소 들어가 新設牧場 등을 둘러 보지 않을 수 없다” 하여 만류를 뿌리쳤다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내용 중의 ‘丁丑年’이 곧 肅宗 23년에 해당하는 해이다.²⁾ 그리고 洪鍾宇의 《觀風案》〈柳漢明〉條에는,

丙子十月 以全羅右水使移拜, 放馬於牛島新設牧場, 己卯五月遞去,

이라 하여, 牛島에 목장이 설치될 당시의 제주 목사는 柳漢明이었으며, 그는 肅宗 22년(1696) 10월에 부임하여 同王 25년 5월에 교체되어 간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목장의 설치 연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다만 당시 목장이 설치되면서 말(馬)이 방목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더욱이 李衡祥의 《瓶窩全書》〈耽羅狀啓草〉에는 당시 목장의 설치 경위와 事後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牛島에 목장을 별도로 설치할 때에 是非의 事端이 많았고, 방목한 후 지금까지도 民怨이 오하려 많습시다. 대개 順風을 기다려 왕래할 때에 물에 빠지기 쉽고 民役이 너무 무거운 나머지 별도로 (목장을) 설치하는 것은 더욱 민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건너가는 뱃길이 매우 험난하여 點馬할 때에는 軍官을 대신 보내는 것으로 이미 事目에는 되어 있습니다. 목장의 利得과 損失, 馬畜의 쇠잔함과 성함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臣이 지난 달에 몸소 가서 세밀히 조사하였더니, 公私의 屯馬는 모두 극히 여위었으나 이 섬의 말은 매우 살찌었고, 각 목장의 번식은 줄어든 것은 있어도 불어난 것은 없었는데, 이 섬의 말은 역시 많이 번식했었습니다.

당초에 방목한 것은 단지 150여 필이었으나 3년이 못되어 아위어 죽은 수가 많아서 105필에 이르렀으니, 다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년 안에 지금 260여 필에 이르렀고, 또 좋은 말(駿骨)이 많아서 柳漢明 전 목사가 비방을 무릅쓰고 屯(목장)을 설치한 것이 이미 實效가 나타났으니, 진실로 다행입니다. 다른 목장의 말이 牧卒에게 주눅들어 날로 더욱 감축된 것은 이를 미루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말은 生草를 먹으며 번식하여 지금과 같음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2) 그런데 金錫翼의 《耽羅紀年》에는 “(肅宗)二十四年夏, 買馬二百餘匹, 放于牛島”라 하여, 목장의 설치 연대를 肅宗 24년(1698)으로 보았으며, 이 때에 말 2백여 필을 사다가 牛島에 방목하였다고 하였다.

土品이 들떠 메마르고 습기가 全無하여 방목한 후에 損傷됨이 이미 지극하였으니, 앞으로 10년이 못되어 반드시 황폐해질 것이 심히 염려됩니다. 석 안을 두루 살펴보니, 生水는 하나도 없고 지금 의지하는 것은 단지 두 곳에 못을 파서 빗물을 받아 놓은 것 뿐이었습니다. 들떠 메마른 땅의 물이 다 스며들어 만일 조금이라도 가뭄이 들면 말은 다 폐사할 것이며, 또 이러한 지경에 이르면 救할 計策이 없습니다. 당장 官屬을 동원하여 혹은 옛 못을 파고, 혹은 새로 보(湫)를 쌓아서 秋冬에 물을 저장할 계획을 세워야 하며, 물이 스며드는 것도 이와 같이 하면 끝내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일의 成事與否는 人力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도 있으니, 이 뒤에 사실의 전말을 마땅히 啓聞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牛島에 목장을 설치할 당초에는 事端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댕길에 험할 뿐 아니라 또 목장을 설치하여 무거운 民役을 더욱 과증시킨다는 것. 둘째, 당시 柳漢明 목사는 모든 바방을 무릅쓰고 일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3년 사이에 처음 방목한 150여필 중 105필이 斃死하여 애로가 많았으나 7년이 지난 지금은 260여 필로 늘어나 일단 성공했다는 것. 셋째, 물 문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이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런데 위 狀啓 내용 중에는,



(예물) 예로부터 우도에는 땅에서 솟는다는 ‘산물’(좌)과 웅덩이에 고인 물인 봉천 (산물) 수 즉, ‘예물’(우)이 있었다. 이 물로써 150여 필의 말과 목장관리인이 식수로 이용했다.

黃泰場…又使統營越冬前, 人送綿布十疋, 則一依牛島設場時貿易之例, 限五十匹貿放良種.

3) 原文 省略.

이라 한 내용이 보이는데, 이는 牛島에 목장을 설치할 당시 방목한 말 150여 필 중 50필은 良種을 사다가 방목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耽羅巡歷圖》〈牛島點馬〉의 下段에도,

壬午七月十三日
中軍
旌義縣監
牧子保人竝二十三名
馬二百六十二匹

이라 하여, 그가 牛島 목장을 점검한 것이 壬午年(肅宗 28, 1702) 7월 13일이었으며, 이 때 中軍과 旌義縣監이 입회하였는데, 牛島에 방목되고 있는 말이 262필, 이를 관리하는 牧子와 保人은 합계 23명이라 하였다. 그런데 그의 《南宦博物》〈誌蹟〉條에는,

今癸未以牛島馬無監牧，余啓請別防鎮助防將，兼監牧看養，朝廷許之。

라 하여, 今上 癸未年(肅宗 29, 1703)에 牛島 목장에는 監牧이 없으므로 내가 ‘別防鎮 助防將으로 監牧을 겸하여 돌보도록’ 啓請하자 朝廷에서 이를 허락하였다는 기사가 보인다. 즉 監牧은 원래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목장을 관리하는 관원이었다. 《朝鮮王朝實錄》〈世宗 7년(1425) 11월 庚申〉條에 의하면,

兵曹啓，馬政軍國所重，國家於各道分置監牧孳息馬匹，然至今馬不繁息者，良由考察之法未盡也。…諸事六品以上稱監牧官，分遣監牧。

이라 하여, 兵曹에서 ‘馬政은 軍國에 중한 바 국가에서는 各道에 監牧을 나누어 배치하여 말을 번식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금 말이 번식하지 않는 것은 考察하고 검찰하는 법이 극진하지 않는 데 까닭이 있으니, 일에 능숙한 6품 이상으로 監牧官이라 일컫는 監牧을 나누어 보내도록’ 아뢰고 있다. 즉 종 6품 이상으로 監牧의 職을 겸하게 하는 것이 통례인데, 濟州島의 경우는 判官이나 旌義·大靜 두 縣監이 겸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앞에서 牛島 목장의 관리 책임자를

監牧이라 하고 이를 別防鎭 助防將으로 하여금 겸직하여 돌보게 한 것은 牛島 목장이 10所場에 비해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거나 관리 책무가 判官에서 助防將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한다. 또한 肅宗 29년에 이르러 비로소 牛島에 監牧이 두어진 것을 보면 그때까지 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따라서 監牧이 두어진 것은 바로 이 때문이며, 그 밑에는 牧子·保人 등이 있어서 직접 말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과거 邑誌들에는 牛島 목장을 ‘牛島場’이라 하는 명목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내용을 인용하여 참고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幅員五十里有水六處，屯馬二百四十三匹，群頭牧子三十九名。

(《濟州邑誌》〈濟州牧 牧場〉條)

② 在州東八十里，屯馬三百十匹。

(《濟州大靜旌義邑誌》〈濟州牧 牧場〉條)

③ 在州東百里，馬監二人，別防水山兩鎭將例兼，群牧二名牧子十四名，屯馬二百七十五匹。

(《耽羅誌草本》〈濟州牧 牧養〉條)

위의 세 기록 중 正祖 初半(1780~1789)에 이루어진 官撰의 《濟州邑誌》에는 牛島場의 규모를 ‘幅員 50리에 물은 6곳에 있고, 屯馬의 수는 243필인데 이를 관리하는 群頭와 牧子は 39명이라’ 하여, 물은 李衡祥이 조정에 올린 <耽羅狀啓草>에는 두 곳이라 했으나 여기에 6곳이라 한 것을 보면 4곳이 붙어났으며, 또 그의 건의에 의해 두어진 監牧이란 말이 없는 대신에 群頭란 직책이 보인다. 그러나 監牧은 別防鎭 助防將이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략된 것으로 볼 것이며, 群頭의 출현도 목장의 관리체계가 정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李源祚의 《耽羅誌草本》에 이르러서는 馬監이란 말이 등장하고 있다. 즉 ‘馬監이 2명인데, 이를 別防鎭과 水山鎭 助防將이 으레 겸한다고 하였고, 群牧이 2명, 牧子가 14명, 屯馬가 275필이라’ 하여, 《濟州邑誌》의 내용과 용어·숫자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馬監의 경우, 別防鎭과 水山鎭 助防將이 으레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도 馬監이 2인이기 때문에 水山鎭 助防將이 추가된 것으로 본다면, 李衡祥이 朝廷에 啓請하여 別防鎭 助防將으로 겸하게 했다

는 《南嶺博物》의 監牧과 동일한 職種으로 보이며, 역시 숫자상의 차이는 있으나 群頭와 群牧도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시대가 흐르면서 용어·숫자상에 변동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도 《經國大典》〈兵典 廐牧〉條의 내용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윗 책에는,

諸道牧場，二雌馬一百匹，雄馬十五匹，爲一群（牛同），每一群定群頭一人（牧子內良人擇定，群副同）群副二人牧子四人 看養，…

이라 하여, '諸道の 목장에서는 암말 1백필과 숫말 15필로써 1群을 삼고(소도 이와 같다) 1群마다 群頭 1인(牧子 중에서 良人을 골라 정하되 群副도 이와 같다). 群副 2인·牧子 4인을 정하여 돌보게 한다'고 하였는데, 《經國大典》의 이와 같은 규정은 《大典會通》에 이르기까지 변동이 없었다. 즉 群은 목장의 소나 말의 사육을 위한 편성 단위이며, 이를 관리·사양하는 책임자로 群頭·群副·牧子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牛島場의 경우, 群副의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되는 것은 監牧(馬監)을 제외한 - 別防·水山 兩鎭將의 겸직이므로 - 群頭(群牧)·牧子가 牛島 목장의 관리인으로서 현지에 주둔했는지의 여부다. 만일 주둔했다면 그것이 목마 관리를 위한 일시적인 것이었다 하더라도 牛島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시초가 아닐까 한다. (후대의 기록들에는 1년에 한두 번 사람을 보내어 點閱하였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제 2 절 開墾에 대한 陳情

그런데 그 후 憲宗 7년(1841)에 이르면 牛島와 加波島⁴⁾의 개간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서술의 편의상 우선 金錫翼의 《耽羅紀年》에 나타난 憲宗 8년의 기록을 보면,

(憲宗) 八年，許民入耕于牛島及加波島，先是放馬于牛島，放牛于加波島以備進貢，至是啓請，竝驅出之放于附近牧場，令民耕納稅于司僕寺，

4) 여기서 加波島도 함께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인용문의 성격상 부득이했음을 밝혀 둔다.

라 하여, 兩島의 開墾 문제에 관한 단편적인 기사를 싣고 있다. 즉 憲宗 8년에 이르러 백성들이 牛島와 加波島에 들어가 경작하는 것을 官에서 허락하였는데, 이보다 앞서 牛島에는 말을 방목하였고 加波島에는 소를 방목하여 進貢에 대비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이 해, 즉 憲宗 8년에 이르러 朝廷에 아뢰어 부근에 있는 목장으로 牛馬를 몰아내어 방목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개간케 하는 대신 司僕寺에 세금을 납부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憲宗 8년부터 개간이 이루어지고 또 司僕寺에의 납세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의문부터 먼저 제기하고 내용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 즉 어떠한 연유로 해서 兩島의 개간 문제가 대두하게 되었으며, 실제 개간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언제부터였을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다음의 기사가 참고된다.

濟州慰諭御史趙庭和復命. 進別單言牛島牧場許民耕墾

즉 위 기사는 《朝鮮王朝實錄》純祖 23년 (1823) 2월 甲子(24일)條에 보이는 내용으로, 이는 純祖 22년 제주도에 전염병이 만연했을 때, 이를 慰撫하기 위하여 내려왔던 趙庭和 御史가 歸京하여 다음 해 2월 復命할 때 進言한 別單 내용의 일부이다. 즉 이에 의하면, 그는 牛島 목장을 백성들이 개간하여 농사지를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進言하고 있다. 그러면 別單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 《備邊司謄錄》純祖 23년 (壬子) 3월 20일자에 의하면, 備邊司에서 다음과 같이 王에게 보고한 내용이 보인다.

방금 濟州牧 慰諭御史 趙庭和의 別單을 보았더니, 그 첫째 조항에 “大靜의 加波島와 旌義의 牛島는 곧 牛馬를 牧養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牛馬는 貢獻의 밀천으로 적합하지 못하지만, 토지가 비옥하여 수천 頃의 농지는 알굴 수 있으니, 지금 牛馬를 부근의 목장으로 분산 배치하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갈아먹도록 허가하되, 3년 뒤에 세금을 거두어 公用에 보태고 民役을 방지해야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耽羅의 토질이 본래 척박한 데다가 폭원 4백리 내의 14개의 목장이 그 반을 점하여, 풍년이 들어도 늘 곡식이 모자랄 것을 걱정하고 조금이라도 흉년이 들면 陸運⁵⁾에 의지해야 하니, 지

5) 陸運이란 곧 羅里鋪倉에서 곡식을 운반해 오는 것을 말한다. 羅里鋪倉이란 肅宗 46년 (1720)에 公州와 燕岐의 경계에 창고를 설치하고 배를 마련하여 곡식을 사들였는데, 景宗 2년(1722)에는 羅州로 옮겨 설치하였고, 英祖 원년(1725)에는 또 臨陂로 옮겨 설치하였다. 濟州 3邑을 구휼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濟州로부터 나오는 宕山·網山·涼太·다시마(海帶)·표고·전복 등도 이 羅里鋪에서 발매하였다. 《譯註牧民心書》Ⅲ(創作과 批評社, 1984), p. 46 參照.

금 쓸모없는 목장을 혁파하여 牛馬를 부근 목장에 분산하여 배치하고, 백성들에게 들어가 살면서 개간하게 허가하시면, 몇 천 경의 농지를 일굴 수 있고 수만 섬의 實穀을 얻을 수 있으니, 그 이로움이 클 것입니다.

本島의 식량을 넉넉하게 하는 방도는 조정에서 걱정하고 있는 바이나, 御史의 말이 또한 이와 같으니, 반드시 목격하여 상세히 아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종전에 개간을 허가하는 일을 불리치느냐 수용하느냐 하는 논의는 늘 司僕寺에서 과단성 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江華·吉祥 등의 목장과 같음은 國初부터 설치하여 지금까지 貢獻의 實効가 있으니, 편리하지 못하다는 논의가 있는 것은 濟州와는 다릅니다. 이미 신설하였는데도 실효가 없으니, 이에 백성들의 큰 소원으로 御史가 아뢰는 것입니다. 가령 말이 몇 필, 소가 몇 필하는 사소한 이해득실이 있으나 어찌 웃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아랫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本務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이 牧政에 관계되므로 司僕寺로 하여금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되, 시행하도록 허락해야 할 것입니다.⁶⁾

우도에 목장이 설치된 것은 1697년이다. 그 후 1842년(헌종 8년) 목장이 폐지되고 개간허가가 났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간이 시작된 것은 1년 후이다.

이에 의하면, 牛島 목장을 개간하지는 논의는 이미 純祖 22년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趙庭和 御史는 당시 제주도 실정을 거의 모르고 단지 慰諭御史라는 신분만으로 제주에 왔었던 것이며, 따라서 牛島 목장의 개간 관계를 건의한 그의 別單 내용도 실은 그가 제주에 왔을 때, 島民들로부터 그 필요성을 청취한 데에 연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 내용 중 “이미 신설하였는데도 실효가 없으니, 이에 백성들의 큰 소원으로 御史가 아뢰게 된 것”이라는 것이 곧 그것이다. 더욱이 備邊司의 보고에서는 담당관청인 司僕寺에서 개간 문제를 과단성 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시일만 천연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왕에게 개간을 허가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 문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憲宗代로 넘어오게 된다.

즉 李源祚의 《耽羅錄》辛丑(憲宗 7, 1841) 4월 28일자 <以本島民事報備局文> (本島의 民事를 備局에 보고하는 글)에 의하면, “자신이 목사로 부임한 뒤

6) 原文 省略.



1697년 우도에 목장이 설치될 때에는 말 150여 필이 있었다. 1842년 목장이 폐지되고 개간되면서, 말은 본도(本島)로 옮겨졌고 개간을 위해 소가 입식되었다.

에 東軒 뜰에 가득히 쌓인 訴狀의 내용을 보니, 대부분이 밭을 다투고, 재물을 훔치며, 인륜을 해치고, 의리에 어그리진 사건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은 일정한 生業이 없어서 本心을 잃은 데에 연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즉시 吏民들을 불러 모아 疾苦를 물었더니, 여러 사람이 일제히 요청하는 것이 ‘朝廷에서 특별히 베푸는 은전을 입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陸地에서의 涼臺의 織造를 금지해 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牛島와 加波島의 개간을 허가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하여, 牛島와 加波島의 개간 문제가 줄곧 요구되어 온 사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개간의 요구는 무엇 때문에 대두되었을까?

위 보고 사항에는 牛島와 加波島의 개간에 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다.

牛畜은 이미 享用에 관계되고 馬場도 또한 軍備에 관계되니, 守田이 된 자 어찌 성급하게 개간을 허락하는 일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두 섬은 名田이 방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쓸모가 없습니다. 牛島場은 장부에 올라 있는 말이 2백여 필이고, 加波島는 장부에 올라 있는 소가 1백여 필인데, 모두 해로가 험악한 곳에 위치해 있고, 포구도 수십 리 떨어진 곳에 있어, 왕래가 불편하고 牛馬를 돌보는 사람도 없이 한 번 방목하고는 그 자폐에 맡겨버렸습니다. 비록 때때로 사람을 보내어 점검한다고 하지만 牛馬의 눈에 사람이 익숙지 못하여 재갈을 채울 수 없고, 貢獻에 충당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여 한낱 도적을 유혹하는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형편으로 논하면 원래 건요한 것이 아니므로 純祖 23년 봄에 慰諭御史의 別單 중에 ‘두 섬의 우마를 각 목장에 분산 배치하고, 즉시 백성들에게 갈아먹도록 허가하였다가 3년 뒤에 세금을 거두면, 公用에 도움이 되고 民役도 방지할 수 있다’고 청하였습니다. 廟堂에서도 아뢰기를 “耽羅의 토질이 본래 척박한 데다 幅員 4백리 내의 14개 목장이 거의 탐라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풍년에도 곡식이 貴할 것을 염려하고 흉년이 되면 오로지 陸運에 의지해야 하니, 지금 쓸모 없는 목장을 혁파하여 牛馬를 부근의 목장에 분산 배치하고, 백성들에게 들어가 살면서 개간하도록 허가하면, 몇 千頃의 경지를 만들 수 있고 또 수만 섬의 實穀을 거둘 수 있으니, 어찌 그 利로움을 걱정하겠습니까. 本島의 식량을 넉넉하게 하는 방도는 조정에서 항상 걱정하는 바이나, 御史의 말이 또한 이와 같으니, 반드시 목격하여 상세히 아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당해 司僕寺로 하여금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되, 시행하도록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允許를 받기에 이르면, 이는 곧 이미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事理의 편리 여부는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겠으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방치해 두고 시행하지 아니 하니, 民情은 괴이쩍지 아니하나 억울한 사정을 다시 논의하여 보고하오니, 결정하여 지시를 내리면 國畜에 있어 줄어드는 폐해가 없고 백성의 재산에 있어서도 豊裕해지는 이로움이 있어 公私가 실로 다 편할 것입니다. 云云”⁷⁾

이로써 보면, 牛島와 加波島의 개간문제는 李源祚 목사가 부임한 직후, 島民들로부터 陳情을 받고 그 사실을 備邊司에 보고했던 것이며, 위 인용문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윗 책 동년 10월 초 4일자로 左議政 金弘根에게 올린 別紙 내용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즉 윗 책 <上左揆書> (左議政에게 올리는 글)條에, “이는 島民의 오랜 資活과 관계되는 일이므로 잘 헤아려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數件事別紙錄上, 此係島民久遠資活, 亦望下諒而裁處焉)라고 하였고, <別紙>의 序頭에도,

7) 原文 省略.

牛島加波島許耕事，已措辭報司不必煩陳，而在國畜既無所損，在民產大有所利，前已判下尚今寢置，民情無怪抑鬱下諒幸甚。

이라 하여, 이미 임금의 결재가 난 것을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어 억울하니,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망하고 있다. 즉 李源祚 목사는 개간 허가를 받기 위해 備邊司 當局 뿐만 아니라 要路에도 동시에 진정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그의 《耽營關報錄》 辛丑(憲宗 7, 1841) 10월 29일자 <騰報備局> (備邊司에 보고함)條에는 그간의 사정을 잘 정리하여 다시 備邊司에 보고한 내용이 있으므로 중복이 되지만 拙譯하여 여기에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본 濟州島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였고 한라산이 그 중앙에 위치하였으며, 周圍 4백 리 사이에는 또 사람이 사는 취락과 숲·시내·골짜기 등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개간한 토지⁸⁾는 10분의 1·2에 불과하고, 10개 소의 목장도 또한 그 반을 차지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경작하고자 하여도 땅은 숲과 같이 귀하고 해마다 곡식이 여물지만 식량은 조과 같이 귀하여, 自古以來로 먹고 살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地勢가 그렇게 되어있는 데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근래에는 또 人口가 점차 늘어나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조들리고, 涼竹이 利를 빼앗아 陸船이 이르는 일이 드물어졌는가 하면 漁藿이 業을 잃고 海戶가 많이 줄어, 땅이 없는 백성은 입에 풀칠할 계책이 없습니다. 牧場田은 主人의 승락도 없이 불법으로 경작되고 잡초를 깎그리 태워 밭을 일구는가 하면 남의 땅을 몰래 개간하고 빼앗아 서로 다투어 소송합니다. 풍속의 야박함이 이와 같아 이를 멈추지 아니하면 몇 년 못되어 全島의 生靈이 장차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 속에 갇혀있는 붕어의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니, 어찌 민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牧使(李源祚 自身)는 부임한 이후에 疾苦를 물어보고 民情을 살펴 보았더니, 일제히 돌려와 하소연하는 것은 牛島와 加波島 두 지역의 목장을 개간하는 일이었습니다. 牛畜은 이미 享用에 관계되고 馬畜도 또한 軍備에 관계되니, 守臣이 된 자 어찌 성급하게 이를 陳情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백성의 하소연이 이와 같으므로 그 설치의 本末을 소급하여 자세히 참고하고, 그 개간할 수 있는 자초지종을 자세히 조사했더니, 두 섬에 목장을 설치한 데에 대해서는 별다른 文蹟은 없으나 대략 백년 전후에

8) 李源祚의 《耽羅誌草本》에 나타난 3邑 田結狀況은,

濟州, 田總 4297結83負9束·旱田3991結92負9束·水田305結82負9束
大靜, 田總 2427結94負5束·旱田2228結99負3束·水田199結 5負2束
旌義, 田總 3399結70負3束·旱田3383結13負3束·水田 16結57負.

불과하였고, 그것도 10所場 소속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대체로 두 지역이 海路가 험한 곳에 있고 浦口가 수십리 밖에 떨어져 있으니, 왕래가 불편하여 牛馬를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牛島의 말은 대장에 올라있는 것이 2백여 필이고 加波島의 소는 대장에 올라있는 것이 70여 마리입니다. 그러나 한 번 방목하고는 그 孳斃에 맡겨 버렸으니, 비록 때때로 사람을 보내어 점검한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牛馬가 사람에 익숙하지 못하여 놀라 날뛰고 광분하여 재갈을 붙릴 수 없고 貢獻에 충당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여 한갓 포기하는 물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年前에 다른 나라 배에서 잡아간 것도 거울삼을 만합니다.⁹⁾

형편으로 논하면, 본래 緊要하지 아니하나, 지형으로 말하면, 牛島는 東西가 5·6리, 南北이 10여리이고, 加波島는 동서가 5·6리, 남북이 4·5리입니다. 당초에 사람이 살지 않아서 폐허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갈대가 썩어 쌓이는 곳이고 우마가 오줌누어 질퍽한 곳이니, 土性이 견실하고 토양이 비옥하여 수백 戶가 넉넉히 차지하여 살면서 몇 千 頃의 경지를 일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癸未年(純祖 23, 1823) 봄에 慰諭御史의 別單 중에 '두 섬의 牛馬를 10소장에 분산하여 배치하면, 방목의 여지가 또한 있을 뿐 아니라 길들이기 어려운 가축도 사람의 견제를 받으면, 포기할 물건이 도리어 유용하게 되어 牧政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땅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갈아먹게 하고 3년 뒤에 세금을 부과해서 公用에 보태면, 民役을 방지하게 되어 실로 地利나 人和의 효과가 될 것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廟堂(備邊司)에서도 보고하기를, '耽羅의 토질은 본래 척박하여 풍년에도 곡식이 貴少할 것을 염려하고 흉년이 되면 오로지 陸運에 의지하게 되므로, 이제 쓸모없는 목장을 혁파하여 牛馬를 부근의 목장에 분산시켜 두고, 백성들에게 들어가 살면서 개간하도록 허가하면, 어찌 利로움을 근심하겠습니까? 本島의 식량을 넉넉하게 하는 방도는 조정에서 항상 걱정하는 바이며, 御史의 말도 또한 이와 같으니, 반드시 목격하여 상세히 아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당해 司僕寺로 하여금 王에게 아뢰어 처리하게 하되 한결같이 시행함을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으니, 允許를 내리게 되면, 이는 이미 은전을 베푸시는 것이 됩니다.

일의 편리 여부는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겠으나 지금에 이르러 民政의 억울함을 잠시 눌러두고 다시 論啓하오니, 결정하여 지시를 내리시면 國畜에 있어서도 줄어들 걱정이 없고, 民食에 있어서도 풍족하고 넉넉할 이로움이 있어서 公과 私에 실로 다 편할 것입니다. 備邊司에서 참작하여 처분하도록 (분부하옵실 일).¹⁰⁾

9) 憲宗 6년(1840)에 英國船이 加波島에 침입했던 사실을 말함.

10) 原文 省略.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제주도는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한 경작지 부족은 물론 인구의 증가로 백성들의 생계가 쪼들리고 거기에다 涼太業과 漁藿을 채취하는 일마저 쇠미해져, 島民의 생활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 牛島와 加波島 목장에 대한 島民의 개간 요청을 들어주도록 朝廷에 狀啓하는 내용이다. 즉 牛島와 加波島 두 지역의 목장을 개간하는 일은 島民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나 牛畜은 享用에 관계되고 馬畜은 軍備에 관계되므로 이를 선불리 朝廷에 陳達할 수 없어, 우선 兩島 목장의 유래와 입지적 조건, 현황, 관리 상태 등을 조사해 보니, 兩島는 목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兩島에 목장이 설치된 것이 고작 백년 정도인데, 그것도 10所場 소속에 불과했을 뿐 아니라 두 지역의 海路가 모두 험난하고 浦口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왕래가 불편하여 牛馬를 돌보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다만 1년에 몇 번 사람을 보내어 점검하지만 그 외에는 그 孳斃에 맡겨버리기 때문에 牛馬가 사람과 익숙하지 못하여 사람을 보면 놀라 날뛰고 광분하여 재갈을 채울 수 없고, 進貢에도 충당하지 못하여 거의 필요없는 물건과 같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사람이 살지 않아서 폐허가 된지 오래되었지만 갈대가 썩어 쌓이는 곳이고 牛馬가 오줌을 누어서 질퍽한 땅이기 때문에 토성이 견실하고 비옥해서 수백 호가 넉넉히 차지하여 몇 千 頃의 경지를 일굴 수 있다고 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이점 때문에 純祖 22년에 慰諭御史로 왔던 趙庭和도 두 지역의 牛馬를 10所場으로 분산하여 배치하고, 백성들에게 그 지역의 개간을 허락하여 3년 뒤에 세금을 거두어 公用에 보태면, 民役도 자연 방지가 되어 地利나 人和에 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에 廟堂에서도 “耽羅는 토질이 본래 척박하여 풍년에도 곡식이 貴할 염려가 있지만 흉년에는 오로지 육지로부터 곡식을 운반해 와야 하는 실정이므로 此際에 쓸모없는 목장을 혁파하고 대신 백성들로 하여금 갈아먹게 허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보고하자 왕이 윤허했다는 것이다. 즉 이는 趙庭和 慰諭御史의 別單과 備邊司의 覆啓 내용을 부연하여, 왕이 윤허했으니 미루지 말고 조속히 처분해 주도록 비변사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다음 해 2월에 이르면 당해 司僕寺에서 왕에게 보고하여 널리 알리었다는 내용이 보인다. 李源祚의 《耽羅錄》

壬寅(憲宗 8, 1842) 2월 초 1일자에,

二月初一日上京押領便, 見備局關文二度及完營答書, 一牛島加波島許耕事亦廟覆依施, 自該寺草記行會, 而三年後執稅, 依節目納于本寺爲定, 牛島驅出及境界分授, 俱係大政, 甘結兩邑使之收議以來,

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제 3 절 執稅와 馬匹의 處理問題

이리하여 牛島와 加波島의 開墾 문제는 헌종 8년 2월 1일자로 승인 통첩을 받았다. 그러나 개간은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개간 후 3년 뒤에 세금을 거두겠다는 것과 마축의 處理問題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위 引用文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3년 뒤에 매기는 세금은 節目에 의하여 司僕寺에 납부하도록 하되, 마필을 주변 목장으로 몰아내는 일과 개간할 땅의 경계를 정하여 나누어 주는 일은 모두 큰 정사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兩邑에 公文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상의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節目이 어떤 것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아마 앞으로 만들 가상적인 내용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兩邑에 甘結한 내용에 대해서는 《耽營關報錄》壬寅 2월 초 3일자 <發甘兩邑>(공문을 兩邑에 발송함)條에,

본도 백성들이 먹고 살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오로지 토자를 개간하지 아니한 데에 연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牛島와 加波島의 개간을 허가하는 일을 廟堂에 요청하였더니, 다행히 보고하여 시행하도록 허락받았다. 지금 봄기운이 점차 개간하는 데에 알맞아 가고 있으니, 이 때에 馬畜을 처리하는 문제와 농민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절차를 의논하여 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뒤에야 (농민들이 개간의) 때를 농칠 여려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마을의 鄉將吏와 백성들에게 알려져 상의하고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하면, 그 재량한 바를 다시 營(濟州牧)에서 절충하여 규식을 정할 것이니, 이 달 보름 안으로 기한을 정하여 事理를 보고해야 할 것임.¹¹⁾

11) 原文 省略.

이라 하여, 개간 허가가 이미 내려졌고 지금은 또 봄 기운이 화창한 2월로 개간에 알맞은 절기이니, 때를 놓치지 말고 馬畜을 처리하는 일과 농민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을 鄉將吏와 백성들에게 알려서 서로 의논하고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하면, 營에서 다시 절충하여 규식을 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아니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간이 島民들이 한마음으로 원한 것이긴 하나 문제는 備邊司에 요청하여 허락을 받은 뒤에, 司僕寺의 공문을 받아보니, ‘개간지에 대해 3년 뒤에 司僕寺에서 세금을 거두겠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즉 3년 뒤의 司僕寺의 납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납세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고 개간은 어떻게 진행되었던 것일까? 《耽羅錄》 壬寅 4월 27일자〈上領閣書〉(領議政에게 올리는 글)에 의하면,

…목장이 司僕寺에 속하므로 事理는 물론 합당하나 島俗이 陸地와는 다르므로 당초 논의하여 보고할 때에 收稅 규모의 대략을 결정하는 데 미치지 못하고, 다만 牧場田의 예에 따라 말하였을 뿐인데, 백성들이 모두 애매하지만 그대로 따르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개간을 허락하는 공문을 보고서는 망령되어 의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생겨 모두가 개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못 사람들이 말하기를, ‘本州의 토지는 당초 세금이 없고 오직 목장의 犯境處에만 收稅하여 경비로 지급하는 예가 있었으나 그것도 개간함에 따라 稅가 다른 데 불과하여 石斗에 升을 거두었으므로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일 兩島의 稅를 司僕寺에서 관장하여 한 번 法式을 정하게 되면 묵은 밭과 개간한 밭을 구별할 것 없이 해가 오래되면 폐가 생겨 서울에서 감독관이 반드시 내려 오게 될 것이며, 만일 이러한 길이 한 번 열리고 나면 장차 목장전과 아울러 重稅하여 目前의 利를 탐할 것이므로, 앞으로 닥칠 일을 아뢰기를, 처음부터 개간하지 아니함만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미 民願에 따라 논의하여 보고하였으나 끝에 가서는 民情을 어기기 어려워 강력히 권하였으나 일의 형세가 兩難이므로 아직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는 3년 뒤의 일을 현재 官職에 있는 자가 미리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일을 처음 시작할 때에 잘 裁量하여 처리하지 못하고 또 즉시 받들어 행하지 못한 것이 애통하고 죄송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¹²⁾

라 하였다. 즉 牛島와 加波島의 목장은 司僕寺에 속하는 국립목장에 해당하므로 司僕寺에서 관장하여 3년 뒤에 세금을 받겠다는 것도 당연한 일이나, 당초 논의

12) 原文 省略.

하여 보고할 때에 收稅 규모를 정하지 못하고 단지 牧場田의 例를 들었을 뿐이나 그래도 島民들은 이를 받아들였으며, 또 本島에는 당초부터 묶은 밭과 토지대장에 등기되어 있는 개간한 밭에는 세금이 없었고, 목장의 犯境處에만 개간하는 대로 세금을 매겨 징수하였는데, 그것도 石斗에 升습을 취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兩島를 개간했을 경우, 司僕寺에서 관장하여 收稅 법식을 정하면 묶은 밭이나 개간한 밭 할 것 없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겨 차후에는 목장전과 함께 重稅가 부과될 것이니, 아예 개간하지 아니함만 못하다는 것이 島民의 의견이라고 하였다. 때문에 李源祚 목사 자신도 3년 뒤의 일은 미리 알 수도 없고 또, 현재는 제주 목사의 직에 있으나 차후에 어떻게 될지 그것도 모르는 실정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당시 領議政에게 이상과 같이 아뢰면서 別紙를 첨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兩島의 일은 이미 왕에게 아뢰고 개간을 허가하는 공문을 받은 뒤에 즉시 개간이 적합한 곳을 측량했더니, 牛島는 보리씨(牟種) 735섬지기(石落), 加波島는 보리씨 72섬지기가 되어서, 당초 繡衣御史의 보고내용 중에 '넉넉히 수천 頃은 일굴 수 있다'는 말과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대개 바닷가의 염분이 들어 있는 갯벌 땅과 산 기슭에 가까운 매마른 자갈 땅은 分數를 많이 차지하며, 또 눈여겨 보지않고 대충 본 것과 몸 소 살펴본 것은 원래 그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收稅 규정은 본래 貊道를 적용하였고, 한결같이 목장전의 例에 따라 세금을 거두면, 겉보리(皮牟) 6·7백 섬에 불과하지만 換賣하면 운반하는 비용이 그것에서 나오니, 司僕寺에서 有無를 논할 것이 못되며, 만에 하나 日後에 島民의 말과 같이 폐단이 생긴다면, 백성을 위해 이익되는 일을 일으키려다가 도리어 원성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만일 例를 끌어 대어 먼 곳의 백성을 어루만지는 뜻으로 특별히 놓아두기를 허가해 준다면, 미리 節制를 작성하여 잘 처리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島中の 이른바 여섯 가지 苦役은 小民의 골수에 사무치는 원한이 되었습니다. 鮑作은 전에 이미 혁파하였고, 畚漢은 근래에 또 稅米를 감하였으며, 牧子도 또한 급료가 있으나, 단지 防軍·船格·牙兵만은 변경의 방위에 임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규휼함이 마땅한데, 곤궁하고 굶주려 전혀 풀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곡식으로 급료를 설정하면, 留防軍에 편입된 자나 番上으로 나가는 자 및 公務로 바다를 건널 때에 드는 糧米의 비용으로 삼는 데 충분하니, 이것이 島民을 위하는 첫번째의 施惠입니다. 그 다음은 당해 司僕寺에 세금을 바친다 하더라도 적은 수를 좇아 법식을 정하되 육지의 例를 적용하지 말며, 한결같이 제주목에 덧붙여 편리한 방법으로 상납케

하고 서울 사람으로 하여금 干預치 않게 하면, 원성을 어루만지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옹드려 아뢰옵건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敎書를 받기 전에 갑자기 牒文을 올리지 않을 수 없어 이에 사사로운 보고로써 외람되이 짜맞추어 전전공공하옵니다.¹³⁾

이에 의하면 兩島의 측량 결과 牛島는 보리씨 735섬지기, 加波島는 보리씨 72섬지기로 낭초 趙庭和 어사의 別單 내용과는 큰 차이가 난다는 것, 本島의 수세 규정은 貊道¹⁴⁾를 적용하는데 한결같이 場田의 예에 따라 세금을 거두면 6·7백 섬에 불과하지만 이를 換賣하면 운반하는 비용이 나온다는 것, 司僕寺에서 收稅하겠다는 뜻을 철회하면 節目을 작성하여 잘 처리하겠다는 것, 즉 本島의 6苦役¹⁵⁾ 중 鮑作·番漢·牧子를 제외한 防軍·船格·牙兵의 급료 등으로 지급케 해 달라는 것, 설사 司僕寺에 납세한다 하더라도 액수를 적게하여 세금을 매기되 그것도 濟州牧으로 하여금 관장케 해 달라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耽營關報錄》 壬寅 7월 27일자 <甘結兩邑及傳令左面風憲>條에 의하면, 제주도에겐 원래 王稅(國稅)가 없었고 목장전도 濟州牧에 납부하는 것뿐이었는데, 이러한 길-司僕寺에의 납부-이 한 번 열리고 나면 뒷 날의 폐단이 염려되므로 司僕寺에 왕래하며 세금 걷는 일을 놓아두기를 간청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여, 부득이 약간의 세금을 정하여 司僕寺에 납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때문에 앞서의 인용문에서 보았듯이 兩邑에 공문을 띄워 鄉將吏와 백성들에게 의논하라고 했던 것이다. 또 이러한 일을 濟州牧에서 관장하게 되면, 농민에게 해가 될지도 모르니 부근의 백성들을 모아 의논하되, 만일 개간을 원하는 자가 있으면, 땅을 부근의 목장으로 몰아내는 일과 토지를 개간하는 등의 절차를 결정하여 晩時之歎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니, 장부를 닦아 보고하라고 다시 부연하여 兩邑에 공문을 띄우고 또 左面 風憲에게도 傳令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섬의 개간은 못 백성들이 원하던 것이었으나 여러 해 동안 겨불이 없었던 일이

13) 原文 省略.

14) 貊道는 稅를 薄하게 하여 10분의 1이 못되는 것(薄稅而不什-貊之道也)을 말한다. 鄭若鏞著(李翼成譯)《茶山論叢》(乙酉文化社, 1987), p. 24 參照.

15) 6苦役의 名色은 일정치 않다.

므로 備邊司에 보고하여 다행히 허락을 받았으나, 즉시 司僕寺의 공문을 보았더니, '3년 뒤에 司僕寺에서 세금을 거두겠다'는 사연이었다. 本土는 원래 王稅가 없고 목장세 또한 제주에 납부하는 것뿐인데, 만일 이러한 길이 한 번 열리고 나면 뒷날의 폐단이 염려되므로 司僕寺에 왕래하며 놓아두기를 애절하였으나 결국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일의 형세가 이와 같으므로 액수를 적게 세금을 정하여 司僕寺에 납부하지 않을 수 없다. 稅穀을 거두는 규정과 상납하는 방법은 마땅히 本府(제주목)에서 단속하지 아니하면 농민에게 폐해를 끼치게 되니, 이러한 뜻을 부근의 백성들에게 상의하되 만일 정작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 말을 인근의 목장으로 몰아내고 토지를 개간하는 등의 절차를 때 맞추어 경륜하여 처리한 뒤에야 시기를 잃은 데 대한 탄식이 없을 것이니, 다음 달 초순 전으로 일제히 장부를 닦아 보고해야 할 것임.¹⁶⁾

그러나 《耽羅錄》癸卯(憲宗 9, 1843) 3월 20일조에는, “馬監 및 校吏를 牛島에 내보내어, 屯馬를 諸屯에 나누어 주고 貢馬 封進을 주관할 때에는, 私馬로 바꾸어서 바치고 雌劣한 말은 값을 더 지급하되, 대개 牛島의 말을 각 목장에 나누어 주는 즉시 치사하거나 출육하여 바꾸어 파는 것은 백성들도 또한 公私 양편의 말을 위하여 받기 때문이다. 加波島도 이와 같은 例로 나누어 주도록 大靜縣에 甘結하고” 이어서 <兩島許耕田分處事傳令> (두 섬의 개간을 허가하고 밭을 나누어 처분하는 일로 전령함)條에서는,

牛島와 加波島의 개간을 허가하는 일은 작년에 이미 備邊司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京司(司僕寺)에 납세하는 법령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모두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개간을 원하는 자가 없다. 島民의 秋收에 세금이 없음은 익히 보고 들어서 괴이함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이와 같이 收稅할 것으로 갑자기 부활되었다. 司僕寺에서는 한결같이 목장전의 例에 따라 蠶에서 종계를 잡게 하면 반드시 백성을 확대함에는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금년 봄부터는 염려하지 말고 들어가 개간하되, 개간을 허가할 적에 만약 백성들에게 맡겨서 스스로 점유하게 하면 쟁탈하여 다 부는 폐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유하여 재산이 많은 자는 밭둑을 連하여 거리낌이 없고, 가난하여 재력이 없는 자는 쟁기를 짊어지고 부질없이 돌아가 더욱 공평하고 균일한 정사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州와 縣을 막론하고 땅이 없는 가난한 백성 가운데 受田을 원하는 자는 各里로 하여금 장부를 닦아 보고하게 하라. (장부에 기록할 때에는) ‘某人名 몇 마지기’라 하여 마땅히 땅이 넓고 좁음을 헤아리고 사람이 많고 적음

16) 原文 省略.

을 계산하여 나누어 처리하고 印帖을 작성 교부하여 증서를 대신 하되, 장부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戶籍名으로 기록하여 후일의 참고 자료로 삼고, 또한 이름을 바꾸어서 대신 받아 소송의 단서를 만들지 말 것이다. 受田한 各人의 印帖紙는 각각 한 장을 몸소 該所에 납부하여 印帖을 받아가게 해야 할 것임.¹⁷⁾

이라 하였다. 즉 司僕寺에 납세하라는 법령 때문에 백성들이 의구하여 개간을 원하는 자가 없자 목장세의 예로 적게 액수를 책정하여 걷을 것이니, 염려 말고 금년, 즉 헌종 9년(1843) 봄부터 우도에 들어가 개간하되, 만일 自任에 맡겨 버리면 분쟁이 일어날 뿐 아니라 부유한 자는 발육을 連하고 가난한 자는 쟁기를 짊어지고 부실없이 돌아갈 것이니, 州·縣을 막론하고 땅이 없는 가난한 자 중에서 개간을 원하는 자는 각 동리에서 장부를 작성하여 보고하면 땅의 광협이나 사람의 다소를 계산하여 나누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장부를 작성할 때에는 호적명으로 기록하게 하고 장부를 작성할 때에 필요한 印帖紙는 각각 한 장씩을 내게 하고 있다. 그리고 윗 책 癸卯 4월 초 1일자 <牛島馬換給民屯, 啓>에서는 牛島 別屯馬의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啓文을 올리고 있다.

牛島의 別屯馬를 각 목장에 분산시켜 떼어주고 백성들에게 개간을 허락하는 일은, 이미 備邊司에 보고하고 왕에게 아뢰어 허락을 받았습시다. 그러나 금년은 또 1년 걸러 點考하여 낙인할 차례이므로 전례에 따라 몰아다 점고한 뒤, 수효를 참고하여 원본과 대조하였습시다. 辛丑年(憲宗 7, 1841)의 馬籍에 올라 있는 말이 247필이고, 여기에 壬寅·癸卯 두 해에 생산된 말 21필을 추가하여 넣으면 합계가 268필입니다. 그 중에서 故失馬(죽은 말) 38필을 계산하여 제외하면 점점에 응할 말은 230필이 되는데, 이들을 몰아내어 바다를 건널 때에 말의 성품이 悍惡하여 굴레나 고삐를 받지 아니하고 뱃길이 위험하여 날짜가 많이 걸리니, 금년에 생산된 말과 늙은 말 중에서 저절로 致死하는 것이 많고 목장이나 船上·길에서 치사하는 수도 무려 34필이나 되었습니다. 이는 실로 일의 형세가 그러한 소치로 까닭없이 缺縮한 것과는 다르니, 事跡에 따라 변상해 내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시급히 건의하옵시다. 각 목장에 분산하여 처리하는 데 대한 便利 여부를 다시 馬監과 群頭에게 물었더니, '모두가 水草의 매마르고 풍성함이 이미 다르고 馬性의 生熟이 같지 않으며 서로 관리하여 길들이지 못하여, 저절로 흩어지고 耗死할 염려에 이르는 것이 10중 8·9에 이른다' 하니, 그

17) 原文 省略.

審慎하는 방도는 合有하는 방편의 계책에 있습니다. 留放馬(농아 기를 말) 196필을 모두 民屯에 분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換納하도록 하되, 그 중에 자열한 것은 지급량을 추정하고 값을 더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이 없도록 하십시오. 貢馬를 封進할 때에 각 목장에서 마땅히 할 말은 이러한 수효로 계산하여 제외하면 放牧하지 아니하여도 公私의 말을 방목한 것과 같으니 실로 兩便이 됩니다. 원래의 마필대장은 연말을 기다려 該寺에 올려 보내되, 이로부터 전례에 따라 혁파하고 공마는 다 채웠으니, 금년부터는 마필대장 한 조목이 호지부지되는 연유를 삼가 갖추어 아뢰옵니다.¹⁸⁾

이에 의하면, 牛島의 別屯馬를 각 목장에 분산하여 떼어주고 개간을 허락하는 일을 備邊司에 보고하고 왕에게 아뢰어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금년이 1년 걸러 짐고하여 낙인할 차례이므로 말을 몰아다 짐고해 보니, 辛丑年의 馬籍에 올라있는 것이 247필이고 壬寅·癸卯 두 해에 생산된 것이 21필, 합하여 268필 가운데 故失馬가 38필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230필이며, 또 여기서 물을 건널 때 치사한 말 34필을 제하면 결국 留放馬(농아 기를 말)는 196필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각 목장에 분산하여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차라리 이를 民屯에 분급하여 貢馬로 換納하도록 장부를 작성하여 司僕寺에 보고하고 전례로 삼고자 하였다.

제 4 절 開墾과 設村

그리고 윗 책 6월 초 2일자 <兩島納稅事報司僕寺> (양도의 納稅하는 일을 司僕寺에 보고함)에는 또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兩島에 起耕을 허가한 일은 전에 이미 草記를 받아 널리 알렸으나 島民이 司僕寺에 세금을 바치라는 傳令을 듣고 크게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 처음에는 기경을 원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애초에는 이미 民願에 따라 仰請하였지만 끝내는 民情을 떨치기 어려워 강력히 권장하였다고 하므로, 금년 봄에 이르러 비보소 牧馬를 몰아내고 그 땅을 비워서 명단을 지급하고 그들로 하여금 기경케 한 즉, 소(農牛)는 있으나 종자가 부족한 백성들은 오히려 회의하여 관망하며 한결같이 받기를 원하지 아니 하였고,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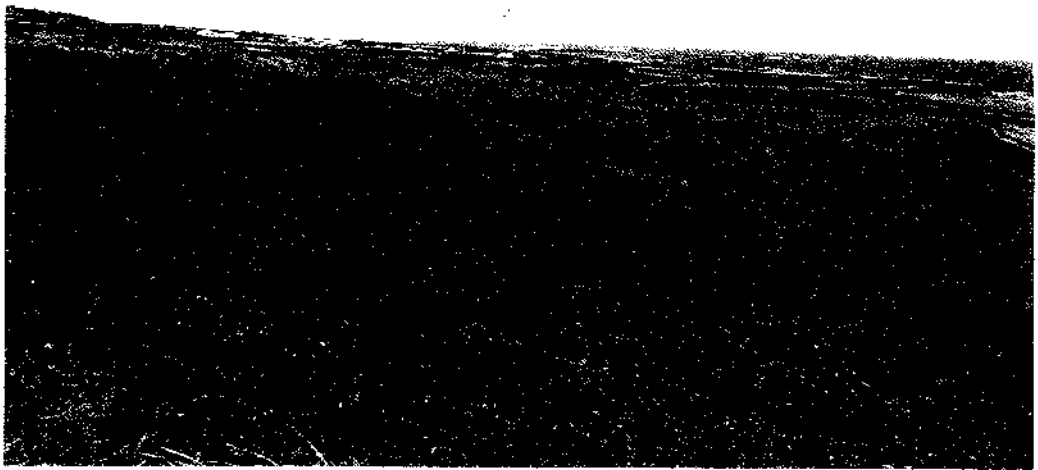
18) 原文 省略.

기를 원하는 자는 단지 땅이 없는 백성 약간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加波島는 한 사람도 들어가 개간하지 않았습니다. 牛島는 비록 간간이 들어가 개간하였다고 하지만 봄부터 여름까지 개간한 것은 백분의 1에 불과하온 바, 만약 원래의 事例에 따라 3년 뒤에 기경하는 대로 조세를 징수하면, 그 거둬들인 합계가 영성할 것이고, 만약 全島가 다 개간되기를 기다린 뒤에 비로소 총계를 잡으면, 세월을 끌며 미룰 것이니, 목장에 나가도 기약이 없고 남몰래 일의 형세를 헤아려 보니, 앞으로 세금을 징수할 일이 지극히 난처하고, 山下 경작을 권장하는 방도에도 더욱 좋은 방책이 없습니다. 대개 그 原田에 세금이 없는 것은 보고 들어서 이미 알고 있으며, 場稅는 起耕하는 대로 가늠하여 前例를 삼겠다고 여러 가지로 효유하였으나 끝내 의혹을 풀지 못하였습니다. 부유한 자는 스스로 물러나고 가난한 자는 힘이 매우 약하기 때문입니다. 牧使는 이에 遞歸하는 날을 당하여 미리 일어나지 아니한 일을 염려할 필요는 없으나 내가 請得하면서부터 조처를 잘해 나가지 못한 소치로 만일 일후에 목사가 되는 자는 위로는 司僕寺의 督責을 당하고 아래로는 島民의 架謫을 끼치게 되니, 어찌 사사로 온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朝家에서 별도로 신칙하여 柔遠하는 뜻을 입어 특별히 寧失하는 뜻에 붙여 司僕寺에 납세하라는 傳令을 도로 거두면, 島民의 感恩感德함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목사도 또한 백성을 이롭게 하려다가 반대로 백성을 학대하게 되는 죄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감히 번거롭고 외람됨을 꺼려하지 아니하고 연유를 갖추어 論報하고 삼가 지시를 기다립니다.¹⁹⁾

위 내용에서도 序頭는 역시 朝廷으로부터 개간의 허가를 받았으나 司僕寺에의 납세문제로 의구심이 생겨 처음에는 島民들이 개간을 원하지 아니했다는 것이다. 애초에는 백성들이 원하여 조정에 간청하여 허가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民情을 거슬러가며 억지로 권하기도 어려웠다 한다. 그러다가 憲宗 9년(1843)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牛島에 放牧하던 馬匹을 부근의 民屯으로 반출하고, 개간을 원하는 사람에게 명단을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개간케 하였는데, 이때에도 農牛는 있으나 種子가 모자란 사람들이 불려나 관망하며 受田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受田을 원하는 사람은 단지 토지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 뿐인데 그것도 소수였다고 한다. 이리하여 牛島의 개간이 간간이 이루어졌지만 봄부터 여름까지 개간한 것이 고작해야 백분의 1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로써 보면, 牛島의 개간과 牛島에의 移住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憲宗 9년 봄부터임을 알 수가 있으며, 따라서 牛島의

19) 原文 省略.

設村도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진다. 다만 당초는 ‘가난한 사람 약간인’이라 하였으니, 그 家戶도 처음에는 얼마되지 아니했을 것이다.



1842년 목장이 폐지되고, 1843년 봄부터 개간이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개간된 경작지에서는 조, 보리, 고구마, 유채 등이 주로 생산되었다. 지금은 땅콩 생산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司僕寺에의 납세 문제는 그후에도 계속 論議되었던 것 같다. 《濟州牧 關牒》 咸豐 元年(哲宗 2, 1851) 10월 28일자에 의하면,

…本州 백성의 고통과 고을의 폐단 가운데, 바로잡아야 할 것이 한 둘이 아니라 지금 가장 치행하기 어렵고 큰 폐해가 되는 것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牛島와 加波島의 稅錢을 사복시에 上納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매년 秋還을 다 분급하여 耗穀을 받는 것입니다.

稅錢으로 말하면, 牛島와 加波島 두 섬은 海中에 따로 떨어져 있어 옛날부터 땅이 개간되지 아니했으나 壬寅年(憲宗 8, 1842)에 바로소 백성들에게 耕種을 허락한 것은 특별히 가난한 백성들에게 있을 곳을 정하여 편안히 살도록 하자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때에 시신을 날낱이 들어 보고하였으나 계속하여 사복시에 稅錢을 바치라는 법령이 있었으므로, 땅이 없는 가난한 백성은 비록 개간을 하고자 하여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日後의 徵稅가 어떤 폐해를 낳을지 알지 못하여 여러 해 주저하며 先占하려 하지 않으니, 여러 가지로 耗유하며 강제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결국 丙午年(憲宗 12, 1846)부터 사복시에서 800兩의 稅錢을 酌定하였다가 昨年(哲宗 원년, 1850) 加波島民의 訴狀에 의하여 百兩을 줄이니, 지금은 7百 18兩 1錢 8분이 되었습니다. 꼭 上納해야 할 것을 감해서 비록 혜택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폐해는 실로 옛날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개 本州가 설치된 이래로부터 私田은 땅이 있어도 公稅가 없고 公場은 稅가 있어도 京納이 없었습니다. 財貨는 돈으로 주고 받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운반하지 아니한 지 수백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각 목장에서 收稅하는 곡식도 前後 御史의 書啓에 따라 各種 公下에 排付하였으나 유독 이 두 섬만은 사복시의 납부를 無稅地에 偏責하고 수십 리 海陸을 운반케 했으니, 그 형세가 곡식으로 米역을 바꾸고 米역으로 돈을 바꾸지 않을 수 없으며, 한 말을 바치는데 드는 費用이 합하여 서너 말(斗)이 되므로, 당초 樂土의 소원은 苦海 속으로 빠져들어 稅錢의 징수가 隣族에 미치고 衙前과 將校는 해산하여 흩어집니다.

그러므로 부임한 지 몇 달 안되었으나 두 섬에서 호소하는 백성들이 뜰에 가득하지 않는 날이 없고, 모두가 京納하는 稅錢을 혁파하기를 원합니다. 島稅로 배기는 곡식도 다른 목장의 예에 따라 偏苦의 患을 면할 수 있도록 陳情하는 바가 정말 절박합니다. ...²⁰⁾

결국 兩島의 납세 문제는 哲宗 2년에 이르러서도 결말이 나지 않아 당시 목사가 다시 朝廷에 兩島民의 陳情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 내용에서 보면 兩島의 稅額은 800냥으로 정하였다가 뒤에 100냥을 減하고 있다. 그러나 일의 處分如何는 未詳이다.

그런데 牛島에의 왕래는 오랜 옛날부터 주변 지역 주민들에 의해 빈번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牛島의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濟州牧 土産〉條에는 代母·자개·앵무·소라 등이 牛島와 大靜의 加波島에서 나며, 無灰木은 牛島에서만 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米역·우무 등의 해조류가 생산되었을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이들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일찍부터 사람의 왕래가 잦았을 것이다. 肅宗 28년(1702)에 李衡祥 목사가 朝廷에 올린 〈耽羅狀啓草〉내용 중에,

20) 原文 省略.

…沿海私馬之昨年被殺者，多至於三十餘匹，況此牛島人跡不及，而採鯨恒留之地也，…

라 하여, 牛島는 人跡이 마치지 못하나 전복을 캐기 위해 항상 머무르는 곳이라 하였으며, 때로는 이들 해산물을 채취하고 돌아오다가 풍랑으로 배가 전복되어 많은 사람이 익사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文獻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다. 朝鮮朝 후기의 사실이라는 하나 한 두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즉 《耽羅啓錄》道光 28년(憲宗 9, 1843) 5월 22일자의 啓文에 의하면,

今月(5월) 19일 도착한 別防鎭 助防將 曹錫祐의 牒報에 의하면, ‘本鎭 管轄의 無注里民 남녀 아울러 27명이 이달 17일에 작은 배 한 척에 함께 타고 牛島에 들어가 해조와 미역을 채집하여 배에 가득 싣고 돌아오는 길에 모진 바람과 성난 파도가 심히 급하여 손쓸 틈도 없이 該島 앞 바다에서 침몰하였는데, 書員 金仁福·旗牌 高春得 및 그의 딸·羅將 金應甫·韓召史·姜召史·金召史·高召史·韓召史·金召史·李召史·韓召史·蔡召史·金召史·韓召史·金召史·李召史·高永進의 딸·金宗連의 딸·高化得의 딸 등 20명이 개미처럼 뚝뚝과 노에 매달려 물결따라 흩어져 표류하는 중에 다행히 인근에 있던 선박의 구제를 받아 겨우 살아났고, 尹廷協의 妻 韓召史·金尙圭의 딸·金應甫의 딸·金鳳喆의 딸·金光祿의 子(9세)·李百連의 子(8세)·高繼元의 子(7세) 등 7명은 그대로 익사하였는데, 시체는 표류하다 연변에 걸려 거의 다 전져 올렸다고 하였는 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익사하여 듣기에 심히 놀라고 참혹합니다. 전례에 따라 常平廳의 皮穀(견보리) 각 한 섬으로 恩典을 베풀어 건져 올린 시체의 연고자들에게 題給하여 그들로 하여금 매장하게 하였으며, 건져 올린 사망자의 거주지와 성명 및 곡물을 成冊하여 備邊司에 올리는 연유를 아울러 馳啓하옵는 일이기로 일이 순서있게 잘 啓導하옵실 일.

道光 23년 5월 23일.

後

拯屍人秩

本州左面無注里 韓소사 45세, 피곡 1석.

김응보의 여 16세, 피곡 1석.

김봉철의 여 15세, 피곡 1석.

김광록의 자 9세, 피곡 1석.

이백련의 자 8세, 피곡 1석.

고계원의 자 7세, 피곡 1석.

김상규의 여 15세, 피곡 1석.²¹⁾

21) 原文 省略.

이라 하였다. 또 《濟州啓錄》咸豐 元年(哲宗 2, 1851) 6월 21일자의 啓文에
는,

을 3월 초 6일 도착한 濟州判官 任百淵의 牒呈에 의하면, 別防鎭 助防將 康履周
의 移牒을 방금 접하였더니, 관할지역인 邊幕里(골막; 東福里) 營假率 愼東訓·旗牌
夫才集·愼時福·旗手 孫京鶴 등이 뗏목 배 2척으로 해초를 채집하려고 牛島에 들
어갔다가, 지난 달 27일 本浦로 돌아올 때에 갑자기 모진 바람을 만나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該里 營假率 文千日·牧訓導 高仁守·燭供 文千吉·弓人 文光孫·
北浦(뒗개; 北村里) 假率 金家仁이 즉시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구제하다가 愼
時福과 夫才集이 탄 뗏목 배는 모두 風濤에 밀리어 간 곳을 알지 못하였는데, 愼東
訓의 뗏목 배는 다음 날 아침에 下道里 연변에 漂泊하여 겨우 살아났다고 하였으며,
지금 석 달이 지나도록 널리 探問을 하였으나 끝내 정박한 곳을 찾지 못하였으니, 만
일 大洋에서 익사한 것이 아니라면 필시 異域에 漂越했을 것이며, 많은 사람의 생사
를 알지 못하여 진실로 극히 慘憺한 연유를 아울러 馳啓하옵는 일이기로 일이 순서있
게 잘 啓導하옵실 일.

咸豐 원년 6월 21일.²²⁾

이라 하였다. 위의 두 사건은 모두가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牛島에 갔다가 돌
아오는 길에 당한 변이었다. 그 원인은 급한 조류와 모진 바람, 성난 파도 등 자
연적인 요소에 의했다고 하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배 자체의 不實함과 過積이
주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전하는 바에 의하면, 憲宗 10년(1844; 甲辰) 金錫麟 進士가 이주하여
迎日洞(後海洞)에 터전을 잡으면서 마을 형성이 급진전되었다는 설이 있는가 하
면, 作者·年代 未詳의 〈演坪陳述書件〉²³⁾에는 ‘제주의 金傷伶이라는 사람이
이 섬에 가난한 백성들을 이주시키려고 純祖 戊子年(28, 1828)부터 운동을 벌였
고, 憲宗 辛丑年(7, 1841)에는 島官據가 牛島의 말을 반출하고 그 익년 일반인
의 이주를 허락한 바, 어업에 적합한 곳이었으므로 가난한 사람이 운집하여 그
해에 天津·古水·後海 3洞이 이루어지고 牛甘·珠玉(현 三陽洞)·錢屹·飛
揚 등 諸洞이 새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내용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22) 原文 省略.

23) 泉靖一: 《濟州島》(東京大學出版會, 1971), p. 198.

앞서 보아왔던 李源祚의 여러 종류의 글을 종합해 보면, 純祖 23년(1823)부터 계속된 제주 백성들의 간청으로 朝廷에 개간 허가를 요청하여, 憲宗 8년(1842)에 승인을 받았으나 사람들이 들어가 개간하기 시작한 것은 마필의 반출이 끝난 憲宗 9년(1843; 癸卯) 봄부터라고 하였다. 따라서 당초 사람들이 牛島에 이주해 간 것은 어업을 목적으로 해서가 아니라 목장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혹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이주하려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나 그것은 목장을 혁파하고 개간을 허가하는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당시로서는 國法을 어기는 행위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어업 목적의 이주는 훨씬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天津·古水·後海 3동이 그 해, 즉 헌종 8년에 이루어지고 牛目·珠玉·錢屹·飛揚 등 여러 洞里가 새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語不成說이다.

당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난한 사람 약간인'의 몇 家口에 불과했을 것이며, 金錫麟 進士가 임주하는 憲宗 10년(1844; 甲辰)부터 마을 형성이 진전되기 시작한 것으로 우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演坪陳述書件〉의 내용은 그 제목에 보이는 바와 같이 '演坪'이란 이름이 쓰여질 무렵의 사실을 올려 붙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光武 8년(1904) 정월에 이루어진 《三郡戶口家間總冊》(內題는 三郡戶口家間上納總, 筆寫本)에는 舊左面 演坪里의 煙戶가 140호, 인구는 남자가 295명, 여자가 384명, 합계 679명, 草家가 469간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위의 戶數나 人口 정도가 되어야 〈演坪陳述書件〉에서 말하는 이른바 7개동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光武 8년은 演坪으로 마을 이름을 정해진 4년 뒤의 일이며, 演坪이란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高泰柱 편 의 《鄉土誌》²⁴⁾에,

牛島에 入住하신 분들은 大舉가 西쪽에서 오셨으니, 「보관」사람들이다. 水準도 높았고 氣質도 高尚하였다. 住居地가 소섬이란 듣기조차 거슬렸다. 그리하여 1900(庚子)년에 當時 當地에서 訓學하시던 表善面 城邑出身 吳完哲(吳 幼學이라 하였다) 先生이 中心이 되어 「演坪」(물에 뜬 두둑)이라 命名 改稱하였다.

24) 『國文學報』 5 (濟州大學國語國文學會, 1973), p. 129.

고 하여, '牛島'란 명칭이 귀에 거슬려 '불에 뜬 두둑'이란 뜻으로 '演坪'이라 개칭한 것이 1900년이라 하였다.

어떻든 牛島가 개간되면서 이주해 온 사람들은 인근지역 출신이 많았을 것이며, 〈演坪陳述書件〉에 보이는 7개동 외에 周興洞도 이 무렵에 設洞된 것 같다. 이리하여 8개 자연부락이 형성되게 되었는데, 그후 계속된 인구의 증가로 1915년 경에는 牛目洞이 上·下牛目洞으로, 天津洞이 東·西天津洞으로 나누어졌고, 1927년에는 演坪里를 두 개의 區로 나누어 區長制가 실시되었다. 즉 1구는 古水·三陽·錢屹·樹興 등의 洞으로 이루어졌고, 2구는 後海·飛揚·牛目·天津 등의 洞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31년에는 연평리의 1·2구가 통합되어(演坪)里制로 환원되었다. 또 해방 후 1949년에는 古水洞이 上·下古水洞으로 分洞되었는가 하면, 1970년에는 後海洞이 迎日洞으로 개칭되었으며, 바로 이 해 2월에 中央洞이 設洞되었다.

1986년 4월 1일에는 舊左邑 演坪出張所가 牛島面으로 승격되면서 현재는 4개



우도항에 세워진 우도면 꽃돌

行政里에 12개 자연부락으로 나누어져 있다. 즉 4개 행정리는 天津里(동·서천진)·西光里(중앙·상·하우목)·五逢里(주홍·삼양·상·하고수·전홀)·朝日里(비양·영일)이다. 이 4개 행정리 중 天津里만이 종전의 이름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고 나머지 西光里·五逢里·朝日里는 새로 命名된 명칭이다. 즉 서광리는 해가 지는 곳, 오봉리는 5개 동이 합쳐진 곳, 조일리는 아침 해를 맞이하는 곳이란 의미의 한자표기이다.

牛島面의 牛島²⁵⁾라는 명칭은 演坪이라 개칭하기 훨씬 이전부터 불리워진 섬의 이름이다. 文獻上에도 牛峰이라 표기된 몇몇 예를 제외하고는 거의 예외없이 牛島로 표기되어 있는데, 牛峰의 峰과 牛島의 島는 원래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峰은 山의 뜻이고 島의 本字는 島로 海中의 山이란 뜻의 글자이다. 그러나 牛島라는 명칭은 본래 우리말의 ‘소섬’ ‘소 모양의 섬’을 漢字表記化(訓譯)한 것으로 볼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문헌들에 예외없이 그 지형을 표현하여 ‘形如臥牛’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양이 ‘누운 소’와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섬 혹은 牛島란 명칭은 이에서 유래한 것이며, 그 名稱도 麗末鮮初에는 널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사기의 史實을 기록한 문헌들에서 그 명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臥牛形’에서 파생된 것으로 ‘牛頭形’, 즉 ‘소머리·형’이라 하는 곳이 있다. 이렇듯 牛島의 지형을 臥牛形·牛頭形으로 보고 있는 데 대한 傳來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섬은 섬이면서도 산 형체로 되어 있지 않고 그 대부분이 농토인 평야로 되어 있으며, 단지 섬의 동쪽만이 조금 높은 오름(山)으로 되어 있다. 이 오름이 있는 곳을 속칭 섬머리라고 하는데, 이 섬 전체를 누운 소로 볼 때에 이 산이 있는 곳이 소의 머리 형이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섬머리라 할 때의 섬(島)과 소(쇠)머리라 할 때의 소(牛)의 의미는 전연 다르다. 그리고 臥牛形·牛頭形과 관련하여 ‘광대코지(소의 엉치)’·‘계우(繫牛)모루(쇠맨물랭이)’·‘출(乾草)까니(구시)’라 불리우는 곳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모두가 보는 이의 視覺에 따라 붙여진 것임에 틀림없다.

한편 이와는 달리 牛島, 특히 牛日洞이라는 동네 이름은 옛날에 소를 치는 牧

25)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牛島라는 지명은 密陽都護府·長興都護府·順川都護府·光陽縣의 각 山川條에도 보인다.

子, 즉 牛牧이 살았었기 때문에 연유했다는 설도 있으나 이는 비약된 논리이다. 필자는 문헌상으로 과거 牛島에 소를 방목했었다는 기록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만일 牛島에 소가 방목되었다면 그것은 牛島의 개간이 이루어 지만서 농경에 사용되었던 農牛였을 것이다. 그리고 牛目洞을 바로 그 앞바다의 하얀 모래와 관련시켜, 즉 백색의 눈(雪一日)과 같다 하여 붙여졌다고도 하나 하얀 눈과 牛目은 전혀 연상이 되지 않는다. 또 牛目洞은 先史時代에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고인돌 云云하는 이야기도 있는 듯 하나 이것만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사람에 따라서는 高麗 穆宗 때에 바다에서 분출했다는 瑞山이 牛島라고 주장하는 견해²⁶⁾도 있는데, 그렇다면 高麗 穆宗 이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섬에 어떻게 先史時代가 있고 고인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전자의 이론이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허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上下 牛目洞을 ‘웃우묵개’·‘알우묵개’라 부른다고도 한다. 우묵개는 우무(天草)+개(浦)의 합성어로, 해조류인 우무(天草)를 캐는 개(浦)로 풀이하는 설이 가장 신빙성이 있음직하다. 즉 과거 문헌들에는 우무를 牛毛로 표기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우무를 캐는 곳을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造語된 것이 牛目이 아닌가 한다.

迎日洞은 1970년 경에 後海洞을 개명한 것인데, 後海洞은 속칭 ‘뒷바당’이라 부르던 곳을 한자의訓(뜻)을 따서 붙인 것이다. 원래 後海洞의 위치는 섬머리(牛島峰)의 서북쪽 바다에 面하였다 하여 뒷바당이라 했다고도 하며, 혹은 이 섬의 개척자인 金進士가 살았던 ‘진사터’의 뒷쪽(북쪽)에 위치하였다 하여 붙여졌다고도 한다. 그러나 마을에 凶事가 잦은 것이 洞名 탓이라 하여 이를 마을의 公議에 붙여 迎日洞으로 바꾸었다고도 한다.

古水洞은 속칭 ‘옛물동네’의 한자표기이다. 그러나 이 古水洞은 오늘날 上下 두 마을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중 ‘옛물동네’는 下古水洞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리고 옛물은 下古水洞에 있는 湧泉水를 말한다고도 하며, 또는 이 용천수를 倭人들이 찾아내었다 하여 ‘예(倭)물’ 또는 ‘이물’이라고 한다고 하나 믿기 어렵

26) 瑞山에 대해서는 古來로 ‘大靜縣에 屬한다’(《新增東國輿地勝覽》), ‘蓋波島(加波島)’(《南嶺博物》), 軍山(《耽羅誌草本》) 등의 說이 있으며, 金榮浩는 最近 牛島라 하였다.

나. 과거에 용전수가 있었다면 지금은 어째서 없는 것일까? 따라서 필자는 李衡祥 목사가 朝廷에 올렸던 狀啓 중에, “牛島의 목장을 시찰해 보았더니, 빗물을 받는 두 개의 인공 못(池)밖에 없어서 10년 후가 염려된다”고 하면서 “옛 못을 깊이 파거나 보(淤)를 새로 쌓아서 가뭄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한 내용의 두 못과 연계시켜 보고 싶다.

錢屹洞은 속칭 ‘돈 둔덕’의 한자표기이다. 돈 둔덕은 곧 돈이 많아나는 둔덕, 돈이 많이 생기는 둔덕이란 뜻으로 풀이하고 싶다. 오늘날 錢屹洞은 天草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다. 따라서 예전에도 사람들이 이 천초를 캐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곳이라는 뜻에서 돈올래, 돈둔덕이라 한 것 같다. 따라서 葉錢을 많이 실은 배의 難破說과 연계시키는 것은 語不成說이다.

周興洞은 19세기에 이루어진 濟州三邑全圖에 獨津浦·曲分浦·朱郁浦 등 세 개의 포구 명칭이 보이는데, 주흥동은 그 중 주옥포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분명치가 않다. 일설에는 전흥동과 관련시켜 돈올래에서 유래했다고도 하고 혹은 청상과부의 아들 송중이의 슬픈 故事와 연계시키기도 하나 부자연스럽다.

天津洞은 ‘한나루’, 즉 한(큰)·나루(津)의 잘못된 한자표기인데, 이는 한나루를 하늘나루·하늘이 등으로 잘못 읽은 데서 빚어진 것이다. 오늘날 牛島의 문호가 되는 곳이며 또한 牛島 최대의 포구가 있는 곳이다.

飛揚洞은 牛島의 동쪽에 위치하여 아침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란 의미에서 붙여졌다고 하나 미상이다. 제주도에는 東飛揚·西飛揚이란 말이 있다. 즉 牛島 동쪽의 비양도를 동비양이라 한다면, 서비양은 翰林邑 비양도를 가리킨다.

제 5 절 異樣船의 來泊

牛島는 地政學上 濟州島내에서도 翰京面의 竹島와 더불어 요충지에 해당된다. 《朝鮮王朝實錄》世宗 21년(1439) 윤 2월 임오(4일)조에,

…詢諸古老皆云，旌義縣東牛峰，大靜縣西竹島，自古倭船隱泊，最爲要害之地，…

라 하여, 여러 古老들에게 물었더니, 모두가 말하기를 “정의현 동쪽의 牛峰과 대정현 서쪽의 竹島는 예로부터 倭船이 몰래 정박하는 가장 要害한 땅이 된다”고 대답하였고, 同王 25년(1443) 정월 병인(10일) 조에도.

又本州東金寧防護所東有牛島，距陸地三十餘里，又其西明月防護所，則西有竹島，距陸地二十餘里，並皆敵船入寇之處，…

라 하여, 김녕방호소 동쪽의 牛島와 명월방호소 서쪽의 竹島는 모두 다 敵船(왜구)이 침입해 들어오는 곳이라고 하였다. 실제 牛島의 동쪽에는 돌구멍이 있어서 노를 저어 들어가면 크기가 石室만 한데, 작은 배 한 척이 들어갈 만하며, 조금 더 나아가면 배 5·6척을 감출만 하다고 하였다. 더욱이 倭船들이 候風을 위해 이곳에 잠입하여 여러 날을 보내어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金尚憲의 《南槎錄》에,

地誌云，島之東有石竇可容一船，稍進則可藏船五六隻，時有漂風倭船，潛入于此，累日不能知，棹入其中大如石室，…

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金錫翼의 《耽羅紀年》純祖 9년(1809) 조에는 琉球人이 牛島에 漂到했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是歲，琉球國巡見官翁世煌，史官姚世康毛維煥等，漂到牛島，巡見官髻上插金簪，簪頭如菊花，頭載紫綾冠，腰拖黃緞大帶，足躡紅靴，史官皆插銀簪，載黃綾冠紺色周衣，大袖長裔，日奉國王命巡察民政，到大島竣事，而還遇風漂來，王都在中山地，國俗都無印信，公行文蹟皆以墨套用之云。

이에 의하면, 琉球國 巡見官 翁世煌과 史官 姚世康·毛維煥 등이 牛島에 표도하였는데, 그들은 국왕의 명을 받들고 民政을 순찰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大島에 이르러 일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바람을 만나 이곳에 漂來하게 되었다. 또 王都는 中山에 있으며, 나라 풍속이 印信(官印)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公行文蹟은 墨套, 즉 붓으로 싸인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차림새를

살펴보면, 巡見官은 상투 위에 금비녀를 꽂았는데, 비녀머리는 국화꽃 모양으로 되었으며, 머리에는 자주색 비단으로 만든 冠을 썼고 허리에는 黃緞의 큰 띠를 둘렀는가 하면 발에는 붉은 신을 신고 있었는데 반하여 史官은 둘 다 은비녀를 꽂았으며, 머리에는 누런 비단으로 된 관을 쓰고 紺色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소매는 크고 옷자락은 길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리고 憲宗 11년(1845)에는 英國船舶이 牛島로부터 興陽·康津 근해까지 출몰하면서 허가없이 산에 오르고 水深을 재는 일을 마음대로 해갔다 하여 朝野의 耳目을 집중시킨 일이 있었는데, 이때 牛島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耽羅紀年》에 의하면,

十一年夏，異船一艘來泊牛島前洋，人形深目高鼻碧瞳髮如羊毛，其中一人容服頗異，粗解文字，乃是華人吳亞順也，或時時放砲響震山岳，投小艇下萊以繩量島，每百步許聚石塗灰，以鐵釘插其上，將遍三邑沿岸，問其所以則曰，岡畫山川云，牧使權稷懼募馬兵銃手城下而備之。

라 하였다. 이에 의하면, 異樣船 한 척이 牛島 앞바다에 정박하고, 작은 배를 내려 노끈으로 섬을 측량하면서 매양 百步 정도에 돌을 모아 灰를 칠하고 쇠못을 그 위에 꽂으므로, 그 이유를 물었더니, 山川을 그리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때때로 이들이 砲를 쏘아 산악에 울려퍼지자 이에 놀란 당시 權稷 牧使가 馬兵과 銃手·城丁들을 모아 이에 대비하였다고 하였고, 《朝鮮王朝實錄》 憲宗 11년(1840) 6월 己未條에는 “이날에 이양선이 湖南·興陽 및 濟州 근해에 출몰하여 왕래하면서 大英國船이라 자칭하였는데, 섬에 이르면 곧 자그마한 하얀 旗를 꽂고 노끈으로 水深을 측량하는가 하면, 돌을 쌓고 거기에 灰를 칠하여 방위를 표시하였나”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株木 세 개를 묶어 세우고 그 위에 鏡板을 올려 놓아 들판에 절을 하며 祭祀를 지낸다는 것이다(羅拜行祭). 그러나 이는 측량기를 가지고 측량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 사람의 눈에 그렇게 비친 것일 뿐이다. 그런데 “濟州 譯學·通事가 달려가서 問情했더니, 그들은 〈錄名紙〉·〈諸國地圖〉·棕櫚扇 등을 던져주고는 돛을 올려 동북쪽으로 떠나 버

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의 英艦名은 Samarang號이며, 船長은 Captain E. Belcher이라 하였다.²⁷⁾

그런가 하면, 光武 8년(1904) 8월 27일자로 濟州牧使 洪鍾宇가 議政府贊政 外部大臣 閣下에게 올린 다음과 같은 報告書 第9號도 있다.

本牧所管濟州郡守洪友淳의報告書를接准內開即見左面演坪里五所任報告陰七月二十四日日本輪船一隻이入泊本浦호고日人數十名이下陸호야家材與役器를卸下本浦호고將有造家之意이다이오며隣次到付大靜郡守南萬里의報告書를接准內開即接右面下幕里機察將朴基永告目內陰七月二十五日已時量에日本輪船一隻이到泊本浦호야日人五六名이下陸호고家材를卸下호야將造三鞭屋於慕瑟峰上호오니未知緣何事端호와先玆馳報等因이온바該兩郡報告書에指飾호되此地은係是不通商港口而外國人之結構家屋를豈可擅許리오另探根委호며各別禁斷호고形止馳報케호얏습더니再次到付濟州郡守報告書內開郡守가궁往摘奸호고問其事實則日人海軍經理部軍屬大竹林造와海軍二等水兵福田庄吉과海軍水兵岩本豊喜의所答內濟州一島가處在東南大洋호야正合瞭望之地故로結구數鞭屋호야以察各國船而已요初無別故이다이오며一時到付大靜郡守報告書內開郡守가馳往該浦호야質問根委즉日本人水軍占賀幸兵衛所答內現今日俄開戰에欲察他艦之往來호야慕瑟峰上에望樓를建造이다이오며且日軍用上攻守는韓日이同盟이라이오며日軍用上警備는秘密이爲主하니不必與人相議요且以地方官彦之라도登諸公文호야播人身目은亦甚不可라호온緣由報告登因이온기該兩郡報告書에亦爲指飾호기를設若瞭望이라노守土官史는必承我國政府知委然後에乃可奉行而經先建屋는有倭國典호니另加禁斷호야第待報部下回라호얏습더니連續到付兩郡報告書內開指飾辭意를更詳說明이온즉答以公文이方將下來이다이오며已建家屋는有難毀撤호와先此報告等因이온바玆에騰報轉報하오니

照亮호시를伏望

光武八年八月二十七日

濟州牧使 洪 鍾 宇

指令第三號

議政府贊政外部大臣 閣下

當據報交涉諸事

十一月十七日²⁸⁾

27) 泉靖一, 前掲書.

28) 《報告書 및 訓令》 建陽 및 光武年間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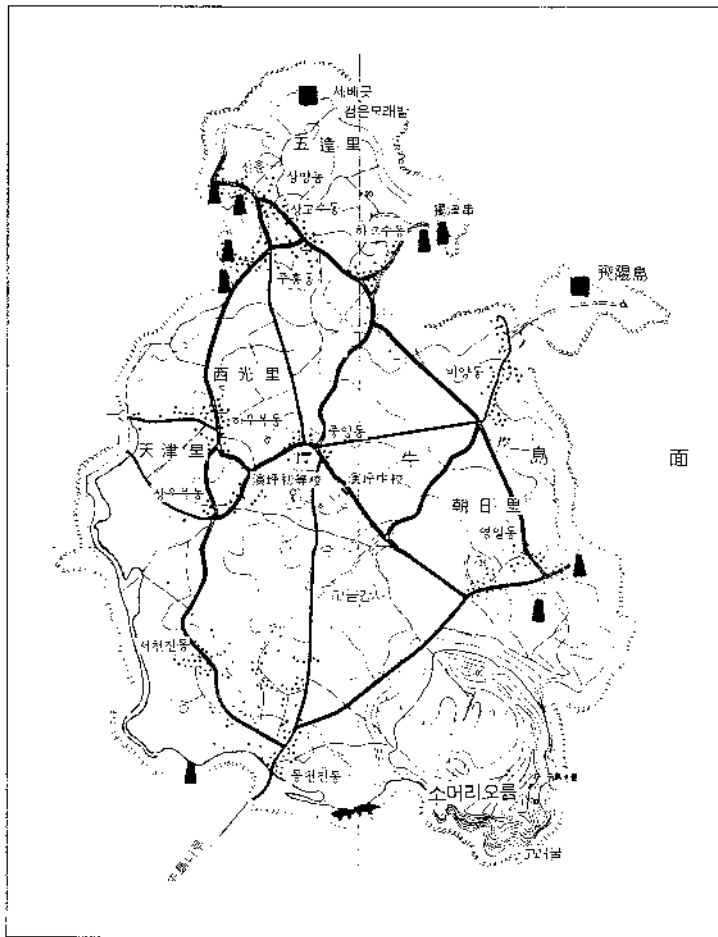
위 報告書는 濟州郡 左面 演坪里 5所任의 보고 내용을 濟州郡守 洪友淳이 접수하여 濟州牧使에게 보고한 내용과 大靜郡 右面 下棼里 機察將 朴基永의 告曰 내용을 大靜郡守 南萬里가 접수하여 제주목사에게 보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전자는 음력 7월 24일에 日本 輪船 한 척이 연평리 포구에 입항한 뒤에, 일본인 수십 명이 家材와 役器를 가지고 상륙하여 집을 지으려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7월 25일 巳時 쯤에 日本 輪船 한 척이 역시 하모리 포구에 입항한 뒤에, 일본인 5·6명이 가재를 가지고 상륙하여 집 세 채를 모슬봉에 지으려 하는데 그 사단이 무엇인지 연유를 알지 못하여 우선 보고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목사는 兩郡 군수에게, “이 땅은 通商과는 관계가 없는 港口이므로 外國人이 집짓는 일을 어떻게 마음대로 허락할 수 있겠느냐?”하면서 그 根本曲節을 탐지하여 각별히 禁斷하고 形止(사실의 전달)를 급히 보고하라고 하였다. 그 결과 재차 도착한 제주군수의 보고 내용은, 군수가 몸소 가서 摘奸하고 그 사실을 물었더니, 日人海軍 經理部軍屬 大竹林造와 海軍水兵 福田庄吉·岩本豊喜 등이 답하기를, “제주도가 東南大洋에 위치해 있어 망보는 데에 적합한 곳이므로 집 몇 채를 짓고 各國의 선박을 살피려는 것 뿐이며,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하였고, 대정군수의 보고 내용은, 군수가 당해 포구에 달려가서 根本曲節을 물었더니 일본인 水軍이 답하기를, “현재 일본과 러시아가 開戰함에 있어 다른 나라 艦艇의 왕래를 관찰하기 위해 모슬봉에 방루를 세우려는 것이며, 또 軍用上 攻守는 韓·日이 함께 맹세하였고, 軍用上 경비는 秘密爲主이니 다른 사람과 상의할 필요가 없으며, 地方官으로 말하더라도 공문을 올려서 남의 신분을 퍼뜨리는 것은 역시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제주목사는 다시 兩郡 군수에게, “설사 망보는 일이라 하더라도 지방관은 반드시 政府에 보고한 뒤에야 실행할 수 있으며, 먼저 집을 짓는 것은 國法에 어긋나니 특별히 禁斷을 가하여, 上部의 下回를 기다리라”하였으나, 계속하여 도착한 兩郡 보고서에 “지시의 내용을 다시 상세히 설명해 주도록 요청”하므로, “공문이 곧 내려올 것이며, 이미 지은 집은 허무는데 어려움이 있다”하여 두 군수의 보고 내용을 베끼어 上部에 보고하는 것이니 사정을 살펴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處分 내용은 마땅히 보고한 내용에 근거하여 교섭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此後 이일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未詳이다.

제 2 장 遺跡과 遺物

제 1 절 序

牛島面은 濟州道의 동북부에 있는 섬으로 濟州島에 附屬된 8개의 有人島 가운데서 가장 큰 섬이다. 위치상으로는 東經 $126^{\circ}58'3''$ 이고 北緯 $33^{\circ}29'6''$ 이다. 면적은 6.7km^2 이다.

牛島面은 南北 약 4km , 東西 약 3km 로 南北으로 길게 이뤄져 있는데 마치 호리병과 흡사한 모양이다. 남동쪽으로 海拔 132m 의 牛島峰이 있



(지도 1) 유적 분포도

고 나머지는 완만한 平地를 이루고 있다. 행정구역은 4개 면에 12개의 自然部落으로 되어 있고 8개의 포구가 형성되어 있다. 牛島의 남측으로는 城山邑 성산리 포구와 우도면 西天津洞 포구까지 3.8km, 서측으로는 舊左邑 종달리와 하우목동 포구까지 2.8km 정도 떨어져 있다.

유적과 유물 조사는 우도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耕作地, 오름, 住居地, 해안선 등에 대하여 編年에 관계없이 실시하였다. 형태가 쉽게 변하는 浦口에 관해서도 기록을 해 두었는데 家内に 있는 産業道具와 당, 무덤, 불통 등은 여건상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조사방법은 현지조사, 口傳採錄, 지도표기, 촬영, 收拾, 기록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지조사는 1차 1992. 11. 16~ 21(6일간), 2차 1993. 3. 7~8(2일간)에 걸쳐 이뤄졌다.

제 2 절 先史時代의 遺跡과 遺物

1. 遺 跡

1) 고 인 돌

우도봉 서측 해안가 가까이에 성산일출봉과 마주보고 있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지도 1).

상석은 길이가 200cm, 너비가 150cm, 두께가 60cm 정도의 크기로 윗면은 자연석 그대로이지만, 모서리는 때내어 다듬은 흔적이 분명하다. 장축방향은 제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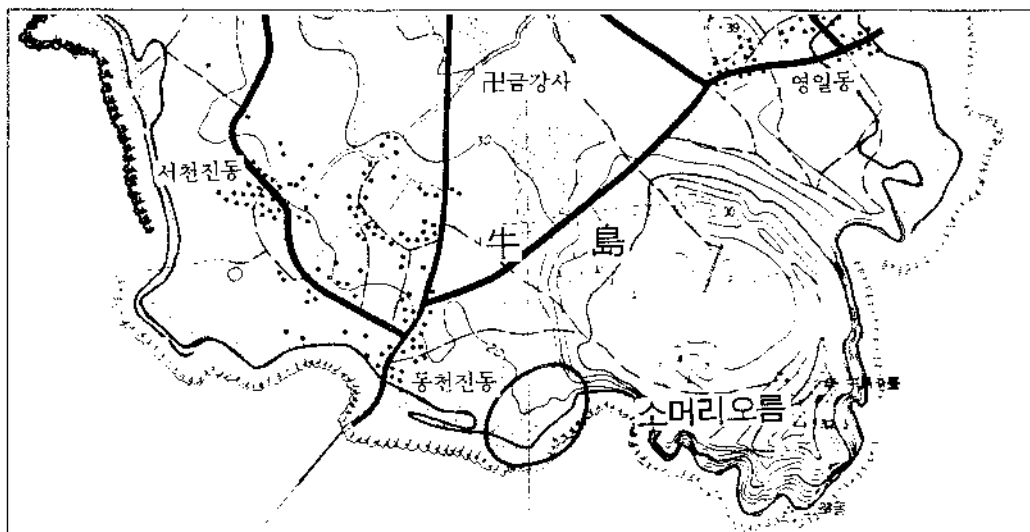
〈사진 1〉



지 석 묘

〈사진 2〉

본섬의 한라산 주봉을 향하는 동서방향이다. 현재 卜石 북쪽에 1매, 동쪽에 상석이 비탈을 따라 다소 미끄러져 드러난 납작한 支石 2매가 확인된다. 1985년도 처음 확인하였을 당시에는 없었던 지석묘 동쪽 길이 새로 조성되면서 지석묘 서쪽 부분이 다소 교란되었다.



〈지도 2〉 지석묘 위치도

2) 우도 고인돌의 성격

우리 나라 고인돌은 한반도에 집중 분포하고 있지만, 북쪽으로는 중국 요령지방, 남쪽으로는 제주도 그리고 일본 구주지방에까지 퍼져 있다. 그중 가장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전남 지방으로서 이 지역에만 2만기가 넘는 것이 조사되어 있다.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그중 가장 빠른 것은 기원전 1000년대 초에 무문토기 제작집단들에 의해 축조되기 시작하여, 늦게는 기원전후한 시기까지 성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와 가장 가까운 전남지방의 고인돌에 대해서는 기원전후한 시기까지 축조되었다고 주장된다.

제주도의 고인돌은 남한지방의 무문토기인들 중 공렬토기를 제작 사용했던 사람들이 제주도에 건너와 처음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공렬토기 사람들이 축조한 무덤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제주도에서는 제주시 용담동에서 발

굴된 石槨무덤 뿐이다. 물론 한반도에서 부문화기인들은 고인돌과 함께 석곽무덤을 축조하였다.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1986년도 발굴조사한 전남 보성강 유역의 승주군 대광리 고인돌 유적의 예를 들어 보면 큰 상석이 있는 고인돌 주변에 별도로 상석이 없는 석곽무덤이 10여기 확인되었다. 따라서 앞서 제주시 용담동 석곽무덤을 축조한 공렬토기집단이 고인돌도 또한 축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러나 제주도에서 조사된 고인돌에서는 공렬토기가 발견되지 않고, 그보다 늦은 시기의 괘지식토기가 발견되었을 뿐이다.

지금까지 제주도에에서 발견된 고인돌은 대체로 90여기 정도 되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무덤의 매장시설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매장시설은 지하에 있는 것과 지상에 있는 것이 있으며, 지하에 있는 경우 상석을 들어내서 발굴하지 않는 한, 무덤 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다. 최근에 남한지방의 섬진강, 보성강, 낙동강 등의 넓은 수몰지역에서 대규모 고인돌군 유적이 발굴되면서 상석을 몇개의 지석으로 고인 고인돌 중에 대부분은 지하에 석곽매장시설이 확인되었지만, 한편으로 지하에 매장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예도 적지 않게 알려지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에서도 일부 고인돌은 지하에 시신을 묻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우도의 고인돌도 그러한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전남지방의 고인돌에 대한 최근의 연구성파에 따르면 이러한 무덤이 아닌 고인돌의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에서 정리된다. 하나는 고인돌이 처음에는 매장시설이 없는 제단으로서 역할을 하였다가, 나중에 지하 석곽묘와 결합하여 무덤으로서 축조되었다는 해석이다. 다른 한 해석은 무덤으로서의 고인돌이 후대에 이르러 지하 석곽시설을 생략한 이른바 지상 圜石式 고인돌로 되면서 제단 혹은 墓標石의 기능을 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지상 위석식 고인돌 전부가 무덤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지만, 그러나 고인돌이 무조건 무덤이라고 주장만 할 수 없다는 해석은 주의를 기울일 만하다. 이렇게 볼 때, 우도의 고인돌은 발굴조사를 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무덤 혹은 제단 어느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 고인돌이 후대에 축조될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역시 발굴조사가 되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인근에서 고인돌 축조 시기에 속하는 마제석부 등의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들어 부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파도에서 많은 마제석기와 폐총 유적이 있으므로 해서, 발굴조사가 되지 않더라도 외관상 고인돌이라고 여겨지는 여러 가파도 고인돌이 실제 고인돌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과 같다.

그 축조 연대는 우선 제주도 본섬의 고인돌 연대가 그 대부분이 괄지1식의 적갈색경질토기 시대라는 점과 우도 발견의 마제석부의 추정시기 역시 앞서 괄지1식토기와 비슷한 시기라는 점에서 대체로 기원 1~5세기경의 어느 한 시점으로 추정된다. 제주도 본섬에서 고인돌 지석과 그 하부에서 확인되는 토기가 바로 괄지1식토기이며, 이 토기가 마제석부와 공반되는 것이 광령리 유물산포지는 물론, 괄지리 패총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 본섬의 대부분의 고인돌과 함께 우도 고인돌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축조된 고인돌이 되는 셈으로, 고인돌 축조 전통이 특히 제주도에서 더욱 오래 지속되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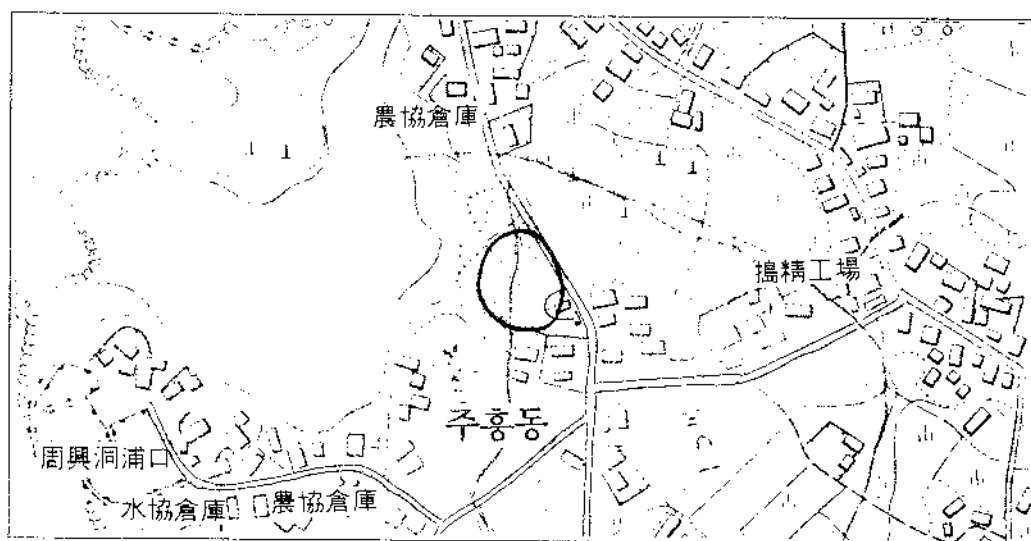
2. 遺 物

1) 돌도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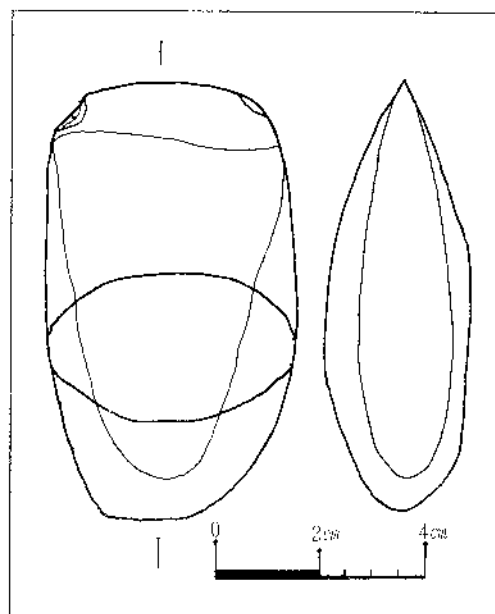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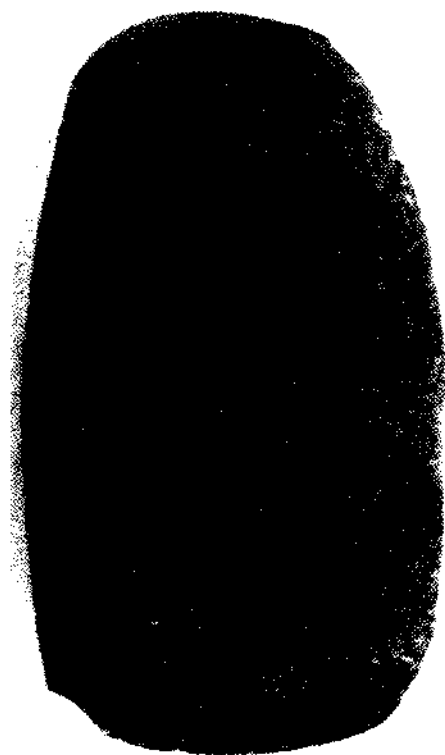
돌도끼는 길이 8.4cm, 너비 4.6cm, 두께 3.1cm로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하는 것이다. 강도가 센 돌을 이용하여 한 쪽을 예리하게 간 것으로 나무를 자를 때나 사냥을 할 때 사용된다. 이 돌도끼가 발견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인 1982년이다. 발견자 고응수(남, 59세)가 그의 소유인 우도면 주흥동 33번지 현 집을 뜯다가 발견하여 지금까지 소장하기에 이르렀다.

발견된 장소는 바다와 거의 붙어있는 곳으로 주위는 암반으로 높게 둘러져 있다. 다만 바다쪽인 서쪽만이 트여있는 듯한 곳이다. 면적은 약 660㎡ 정도이고 地表上의 흙의 두께는 상당히 얇은 것으로 보인다. 지표상에는 자갈과 舊韓末에서 近代의 陶磁器片들이 散布되어 있다.

이곳은 구좌읍 종달리와 마주보고 있고 발견된 선사유물도 종달리 유적에서出土되는 것과 같은 시기의 것으로 추정됨으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나 일시적인住居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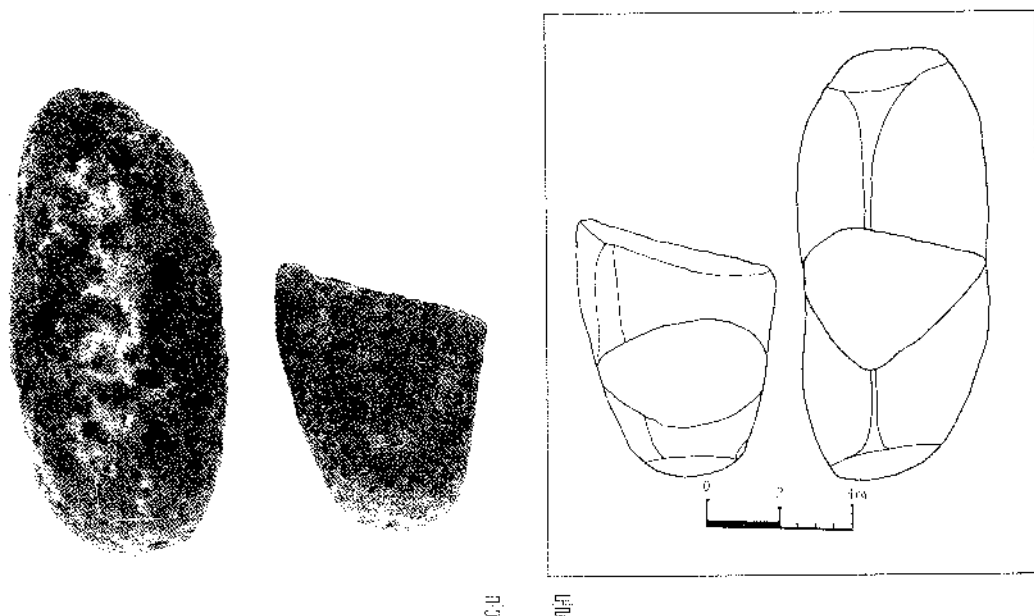
〈지도 3〉 주흥동 선사시대 유물 출토지



돌도끼

2) 몽돌-1

음식이나 藥草 등을 빻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 길고 둥근스름한 돌을 사용하고 양쪽 마구리를 이용한다. 그래서 마구리면에는 부딪혔던 흔적이 남아 있다. 앞의 고웅수씨의 제보에 따라 돌노க்க가 발견된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다. 규격은 11.8cm, 두께 4.7cm이며 상면이 양호하다. 다공질 현무암으로 제작되었다.



3) 몽돌-2

앞의 것과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것이다. 몽돌-1보다는 많이 사용하여 부딪힌 면이 훨씬 넓게 형성되었다. 반쪽으로 조각나 있다. 규격은 길이 6.8cm, 너비 4.9cm, 두께 2.8cm이다. 다공질 현무암으로 제작되었다.

제 3 절 朝鮮時代 및 近代

1. 望臺와 防邪塔

1) 望 臺

우도의 望臺는 제주도에 있는 煙臺들과 흡사한 형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용도상으로 보면 觀察하기 위한 것으로 煙臺처럼 관찰하고 신호로써 적을 알리던 것과는 약간 다르다. 우도의 望臺는 두 곳에 있는데 모두 우도의 북쪽에 있어서 우리 나라 남해안 쪽을 觀察하게 되어 있다.

이 望臺가 쌓아진 시기는 제주도의 4·3사건(1948) 당시로 牛島 사람들에게 의하여 만들어 졌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煙臺와는 분명히 다르나 근대의 4·3관련 遺跡으로는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또한 石築와 흡사한 점이 많으므로 煙臺의 石築방법을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 답다니탑 望臺



답다니탑

전흘동 북쪽 바닷가에 있다. 속칭, ‘답다니탑’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망대가

있음으로 인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완만한 경사를 이룬 바닷가의 암반위에 평면 사각, 정면 사다리꼴 형태로 이뤄졌다. 築造石은 넓적한 현무암을 이용하고 있고, 축조방식은 제주도의 성과 같은 방식인데 甃型으로 쌓아지고 있다.

크기는 높이 370cm, 東上 486cm, 東下 730cm, 西上 487cm, 西下 715cm, 南上 535cm, 南下 770cm, 北上 453cm, 北下 720cm이다.

주요 관측 방향은 북, 동, 서쪽으로 보이며 계단은 남측으로 나 있다. 상호관계는 동쪽으로는 비양동 望臺, 남쪽으로는 연대동산(추정)이다.

(2) 비양동 望臺



비양동 망대

비양동 동북쪽에 있는 비양도 동북쪽에 있다. 望臺의 북측으로는 급경사의 암반이고 나머지 방향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높은 곳이다. 형태는 평면 사각, 정면 사다리꼴 형태를 이루고 있다. 築造石과 축조방식은 달다니담 望臺와 같다.

크기는 높이 360cm, 東上 460cm, 東下 670cm, 西上 440cm, 西下 830cm, 南上 520cm, 南下 795cm, 北上 430cm, 北下 840cm이다.

주요 관측 방향은 동, 동남, 북, 서쪽으로 추정된다. 계단은 동측으로 나 있다. 상호관계는 남쪽의 연대동산, 서쪽의 달다니담 望臺로 보인다.

2) 防邪塔

제주도의 防邪塔은 마을의 災殃을 막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형식은 사다리꼴형과 원뿔형이 있다. 보편적으로 2기가 한조가 되는데 때로는 1기만을 세우기도 하고 많게는 4기 이상의 세워지기도 한다. 牛島面의 防邪塔(厄塔)들은 전자에 속하는 2기 1조의 형식들이 대부분이다. 세워진 이유는 災殃을 막기 위한 것이 공통적이다. 하고수동과 상고수동의 경우 남녀 즉, 陰陽을 구분하고 있으며, 동천진동의 경우는 1개뿐이며 煙臺, 바다경계를 뜻한다고 하여서 특이한 양상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영일동의 경우는 1기는 사다리꼴형이고 1기는 원뿔형이라서 이 또한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1) 하고수동 厄塔



하고수동 액탑(북쪽)



(남쪽)

하고수동 포구 양쪽(남, 북)에 각 1기씩 모두 2기가 있다. 북쪽 厄塔은 바나에서 200cm 정도로 높은 암반위에 높이 206cm, 지름 290cm 정도로 원뿔통형으로 쌓여 있고, 남쪽 厄塔은 바다에서 높이 320cm 정도의 岩盤위에 높이 240cm, 지름 320cm 정도로 쌓여져 있다. 마을 사람들은 '厄塔'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築造石은 현무암을 그대로 쌓고 있는데 기왓 거칠게 다듬은 흔적이 보인다.

口傳에 의하면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긋은 잡귀를 막아 준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북측의 것을 하르방이라 하고 남측의 것을 할망이라고 하여 남과 여를 구분하고 있다. 이는 곧 陰과 陽을 뜻하기도 한다.

(2) 주흥동 防邪塔



주흥동 방사탑(남쪽)



(북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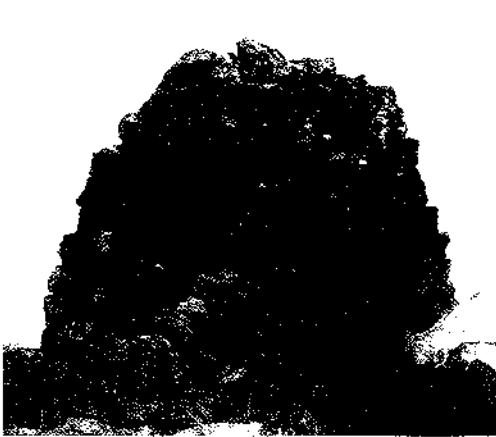
주흥동 포구 남, 북쪽에 각 1기씩 모두 2기가 있다. 크기는 남쪽 것이 높이 220cm, 지름 310cm 정도이고 북쪽 것이 높이 210cm, 지름 270cm 정도이다. 모두 원뿔통형으로 쌓여져 있는데 남쪽의 경우 상단부에 넓적한 돌이 세워져 있고 돌의 정면(북쪽)면에는 辛卯石이라고 陰刻되어 있다.

축조석은 현무암을 거칠게 다듬어 쌓고 있는데 口傳에 의하면 당알코지에 있는 것을 하르방, 할망알코지에 있는 것을 할망이라고 하여 男과 女 즉 陰陽을 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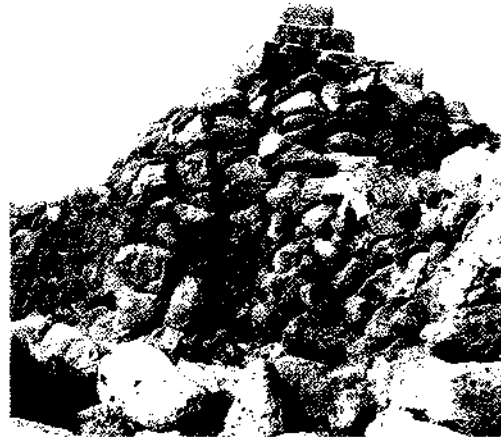
(3) 영일동 防邪塔

조일리 영일동 포구에 1기와 동남쪽의 耕作地에 1기가 있다. 포구에 있는 것은 평면 사각형, 정면 사다리꼴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높이 530cm, 너비 450cm 정도가 된다. 상단면은 세멘트로 발라 있고 조그만 구멍 3개를 뚫어 놓았다. 1962. 10. 11 공사라고 음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때에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築造石은 현무암을 대략 다듬어 사용하고 있다.

동남쪽 耕作地의 것은 원불통형으로 높이 290cm, 지름 280cm 정도가 된다. 축조석은 현부암을 거친다듬하여 사용하고 있다.



영일동 방사탑(남쪽)



(북쪽)

(4) 동천진동 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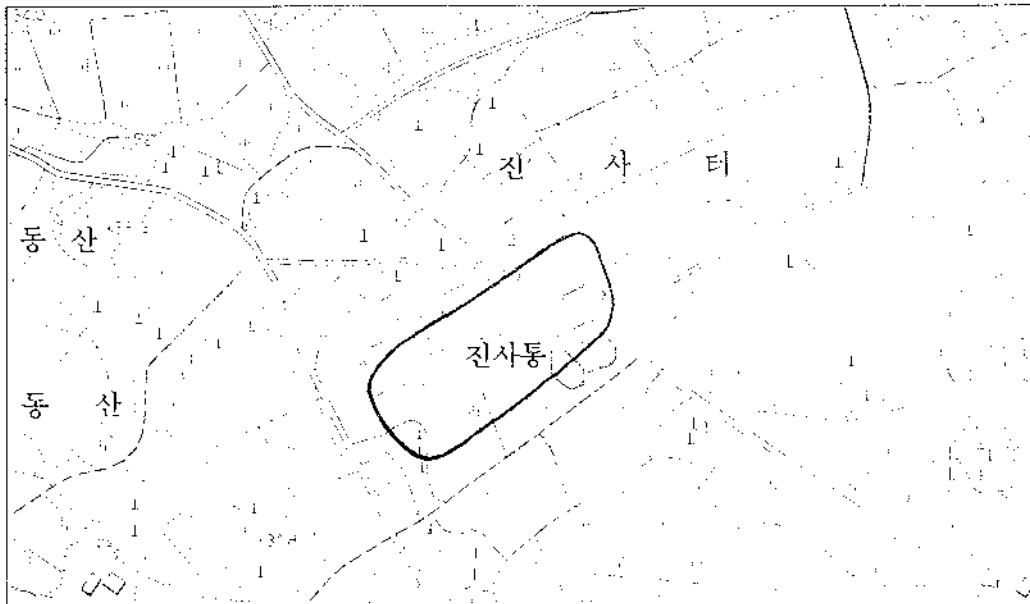
서천진동탑

동천진동 포구에서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 1기만 있다. 높이 250cm, 지름 330cm 정도인 원뿔형으로 쌓아졌다. 북측면에 세멘트로 발라진 곳이 있는데 陰刻으로 ‘봉화대 1976년’이라고 써져 있다. 이 탑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口傳에 의하면 동천진동과 서천진동의 바다 경계 표시, 防衛兵들이 쌓은 것, 望臺 등으로 알려지고 있어 매우 불확실하다.

2. 집터와 遺物 散布地

1) 집 터

(1) 김진사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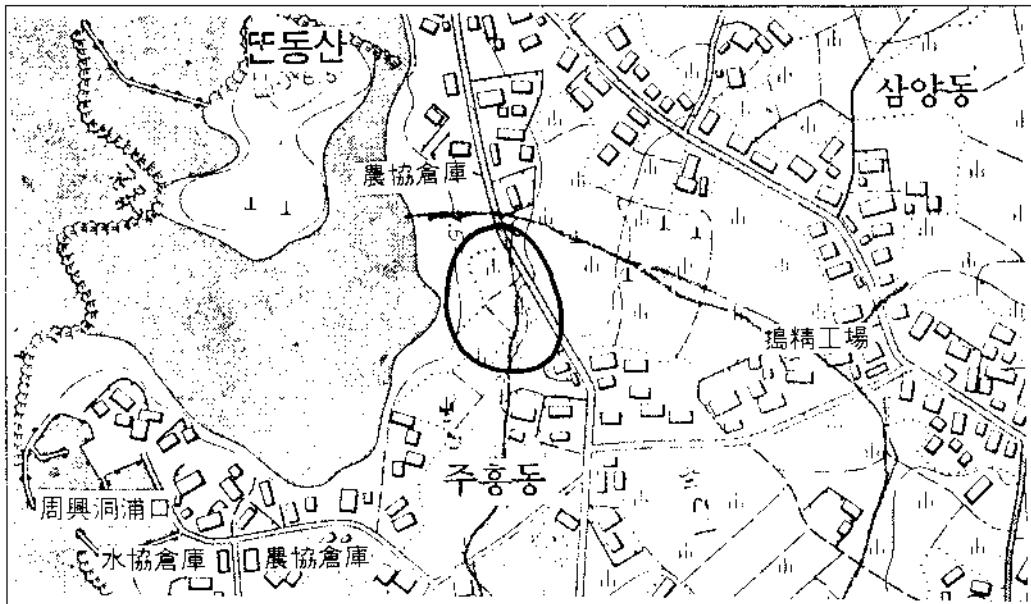
〈지도 4〉 김진사터 위치도

朝鮮時代 철종 때에 김석이라는 進士가 소섬에 입도하여 居住했던 곳으로 알려지는 곳이다. 중앙동과 영일동으로 이어진 길 동남측 耕作地로 범위는 대략 4필지 정도이다. 동쪽으로는 우도봉이고 있고 북쪽으로는 외부림(외무림)동산이 있다. 주가지라고 알려지고 있는 곳은 현재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남측으로 대나무가 심어져 類推할 수 있을 따름이다.

북측으로 김진사통이라고 하는 물통(봉천수)이 2군데 형성되어 있는데 口傳에 의하면 김진사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주흥동 집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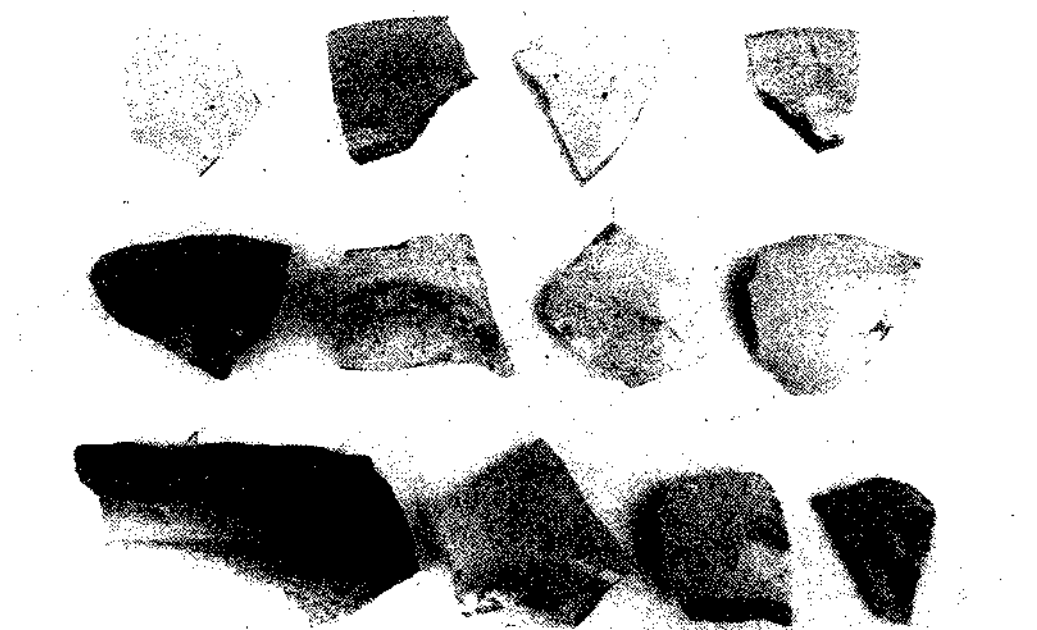
〈지도 5〉 주흥동 집터 위치도

주흥동 33번지로 先史時代의 돌도끼와 몽돌이 발견된 곳이다. 이곳에는 조선 시대 후기의 것으로 보이는 도자기편들이 있는 바 이는 사람이 居住하였음을 立證하는 자료이다. 이곳은 경작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다와 근접되었고 주위 지정보다 레벨이 낮아 사람들이 거주하기에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① 朝鮮白磁사발片

기형은 破片이라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外反된 굽에 曲線을 그리며 서서히 外反되는 樣相을 보여 작은 사발류의 것으로 보인다. 회청색으로 나타나는 釉藥은 사발의 내외부는 물론 굽안까지 골고루 施釉되고 있으나 굽안은 기포발생 흔적이 있다. 胎土는 세밀한 모래가 혼합된 粘土인데 수비가 잘 되어 기공이나 균열은 보이지 않는다. 굽은 들린굽을 하고 있으며 모래받침을 하고 있다〈사진⑪〉.

보편적으로 이러한 양상의 도자기는 조선시대인 17~18세기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濟州島 一圓의 집터나 遺物散布地에서 자주 나타나는 도자기의 종류이다.



주흥동 집터 수습유물

- | | | | |
|-----------|-----------|---------|---------|
| ① 조선백지편 | ② 조선백지편 | ③ 조선백지편 | ④ 모몰사기편 |
| ⑤ 조선백지증지편 | ⑥ 조선백지대접편 | ⑦ 조선백지편 | ⑧ 조선백지편 |
| ⑨ 시루편 | ⑩ 모몰사기대접편 | ⑪ 조선백지편 | ⑫ 조선백지편 |

② 朝鮮白磁대접片

굽은 모양은 들린굽이며 모래굽받침을 하고 있다. 수직된 듯한 굽과 外反된 기벽으로 보아 대접인 것으로 판단된다. 釉藥은 청색을 머금은 백색으로 대접의 내외부에 골고루 施釉되고 있으며 상태로 양호한 편이다. 胎土는 백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수비가 잘 되어서 기공이나 균열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사진⑥>. 이러한 대접류는 제주도 일원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지라고 판단되는 곳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막그릇으로 사용된 듯 하다. 시기적으로는 조선시대에 해당되는 18~19세기의 것으로 類推된다.

③ 朝鮮白磁종지片

작은 조각으로 전체의 기형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굽이 작고 급격히 올라가는 기벽을 하고 있어서 종지로 보아 타당할 것 같다. 釉藥은 회백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종지의 내외부로 골고루 施釉되고 있다. 胎土는 백토질의 粘土이며 수비가 양호하게 이뤄져서 균열이나 기공이 전혀 없다. 굽은 들린굽이며 모래굽받침을 하고 있다<사진⑤>. 濟州島에서는 쉽게 나타나는 종류이며 시기적으로는 조선시대인 19세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④ 朝鮮白磁片

백색과 회백색으로 나타나는 胎土는 세밀한 모래가 혼합되어 있으며 수비의 상태가 양호하다. 釉藥은 회백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破片의 내외부로 골고루 施釉되고 있다. 모두 조그만 조각으로 기형은 알 수 없으나 시기적으로는 조선시대인 19세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사진① ② ③ ⑦ ⑧ ⑫>.

⑤ 모몰사기대접편

胎土는 갈색을 머금은 백토이다. 수비는 적당히 되고 있어서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잔기공이 보인다. 유약은 청색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 미색의 백자유인데 대접의 내외부로 골고루 施釉되고 있다. 유약에 거미줄과 같은 세세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모몰사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사진⑩> 시기적으로는 조선시대말기인 19세기와 근대초기인 20세기초에 제주도내에서 주로 사용된 도자기이다.

⑥ 모몰사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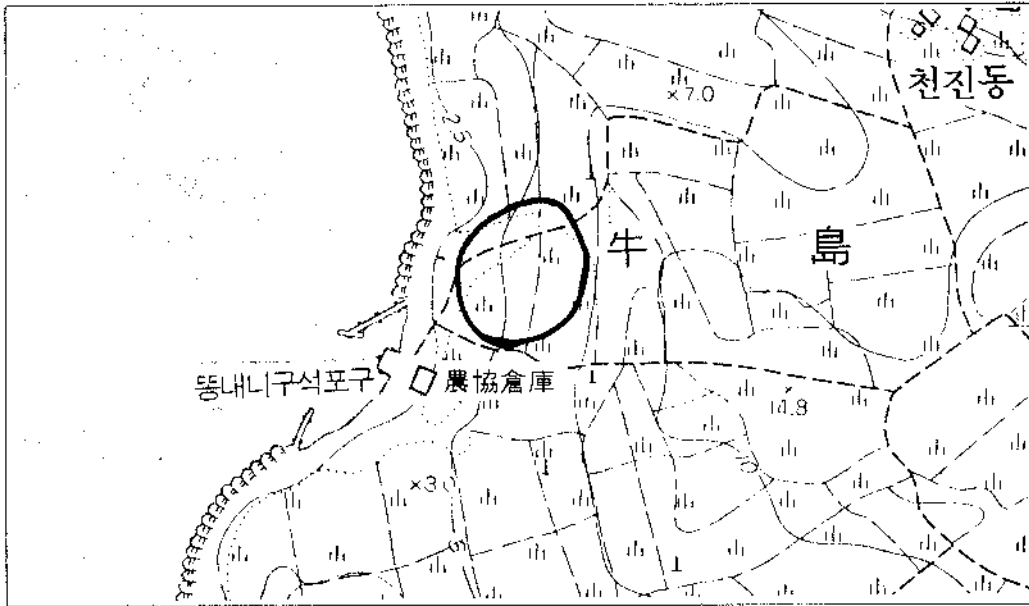
파편으로 기형은 알 수 없다. 胎土는 갈색을 머금은 백토이다. 유약은 회색이 약간 함유된 미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두텁고 거미줄 같은 잔 균열이 있다<사진④>. 시기적으로는 대략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기에 사용된 것이다.

⑦ 시루편

기벽은 적립되고 급격히 외반된 입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조선시대말기에서 근대중기까지 사용된 시루라고 판단된다. 釉藥은 전혀 施釉되지 않았고 초벌구이에서 완성된 것이다<사진⑨>.

2) 遺物 散布地

(1) 서천진동 遺物 散布地



〈지도 6〉 서천진동 유물 산포지

서천진동 포구로 진입하는 도로의 좌(남)측 경작지서 收拾된 유물들은 조선시대 후기에서 근대초기의 陶磁器들이다. 주변 상황으로는 서측으로 바다와 연결하여 나머지 방향으로는 보편적으로 지형의 높낮이가 심하지 않은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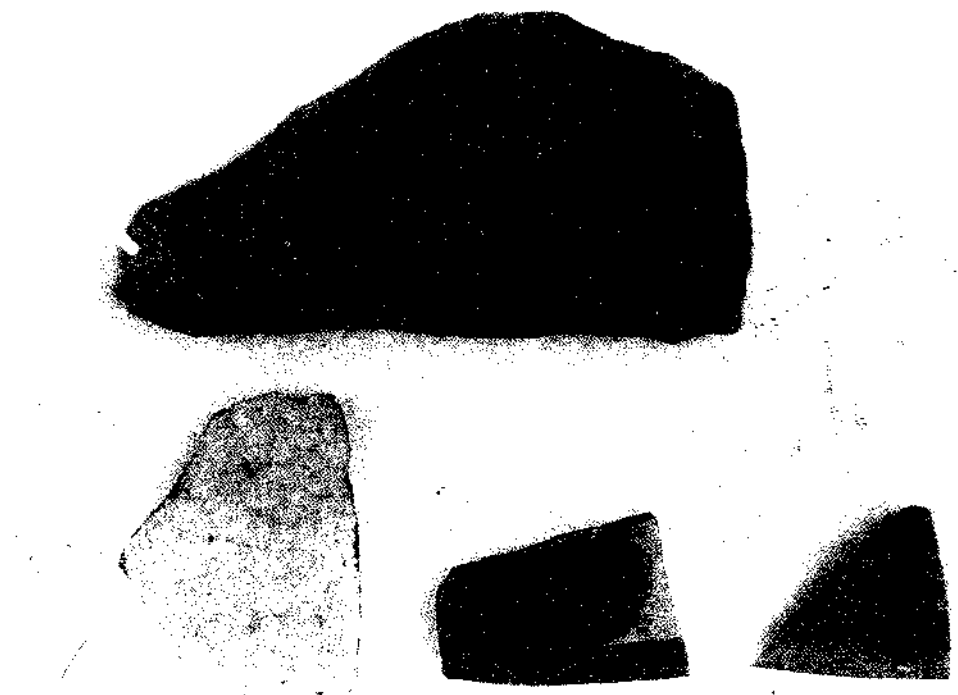
① 朝鮮白磁片

유약은 청색을 머금고 회백색으로 나타나고 있고 기명의 내외부로 골고루 시유되어 있다. 태토는 아주 세밀한 모래가 혼합된 회색의 粘土인데 수비의 상태가 양호하여 균열이나 기공은 눈에 띄지 않는다. 조그만 파편으로 기형을 추측하기에는 미흡하나 구연부가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대접으로 類推된다〈사진②〉.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말기에서 근대초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朝鮮白磁片

연갈색으로 나타나는 胎土는 세밀한 모래가 소량으로 섞여 있다. 수비의 상태

는 양호한 편이라서 기공이나 균열은 찾아볼 수 없다. 유약은 연회색으로 기명의 내외부로 곧고루 施釉되고 있는데 짧은 氷裂이 있다. 조그만 파편으로 정화간 기형은 알기 어려우나 구연부가 급격한 곡선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 종지의 일종으로 類推된다(사진③). 시기적으로는 조선시대 말기에서 근대초기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시천진동 유물 산포지 수습유물

- | | | |
|---------|---------|---------|
| ① 모물사기편 | ② 조선백자편 | ③ 조선백자편 |
| ④ 시루편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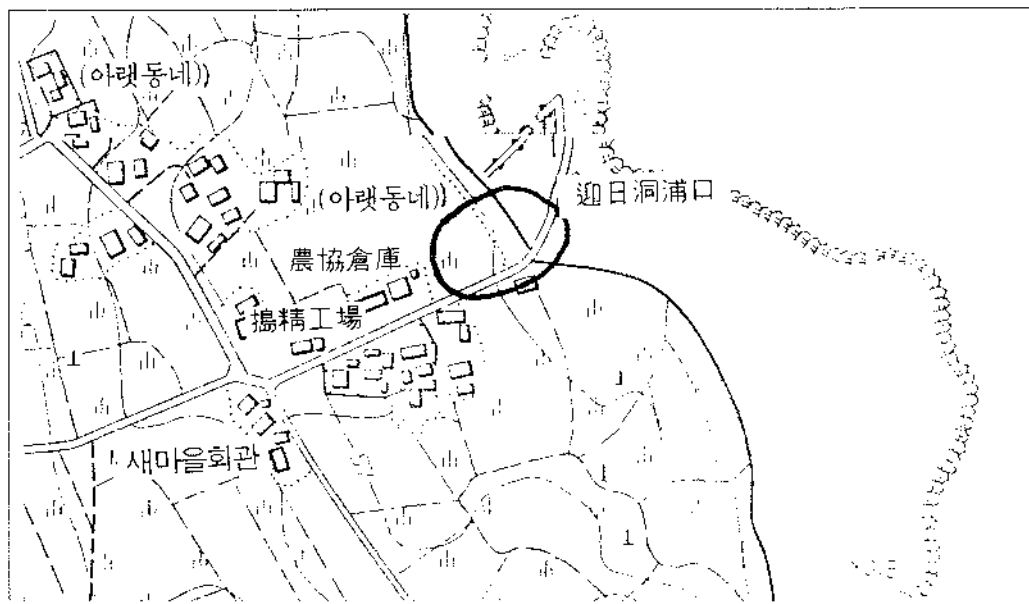
③ 모물사기편

흰색으로 나타나는 유약은 기명의 내외부로 곧고루 施釉되고 있다. 유약의 상태는 좋은 편이나 거미줄 모양의 세세한 氷裂을 동반하고 있다. 胎土는 세밀한 모래가 혼합된 粘土이다. 조그만 파편으로 기형을 類推하기에는 부적합하다(사진 ①). 시기적으로 조선시대 말기에는 근대초기에 사용된 모물사기라는 陶磁器로 제주도에서 상당량 사용되었다.

④ 시루편

작립된 기벽에 두툼한 입술을 하고 있는 질그릇으로 시루의 구연부와 흡사한 모양을 하고 있다. 胎土는 연갈색으로 세밀한 모래를 혼합하고 있다. 수비는 보편적으로 양호하게 되어 있는 편이나 거친 듯한 느낌을 주며 가끔 잔 기공도 있다(사진④). 대체적으로 조선시대 말기에서 근대초기에 사용된 종류로 類推된다.

(2) 영일동 遺物 散布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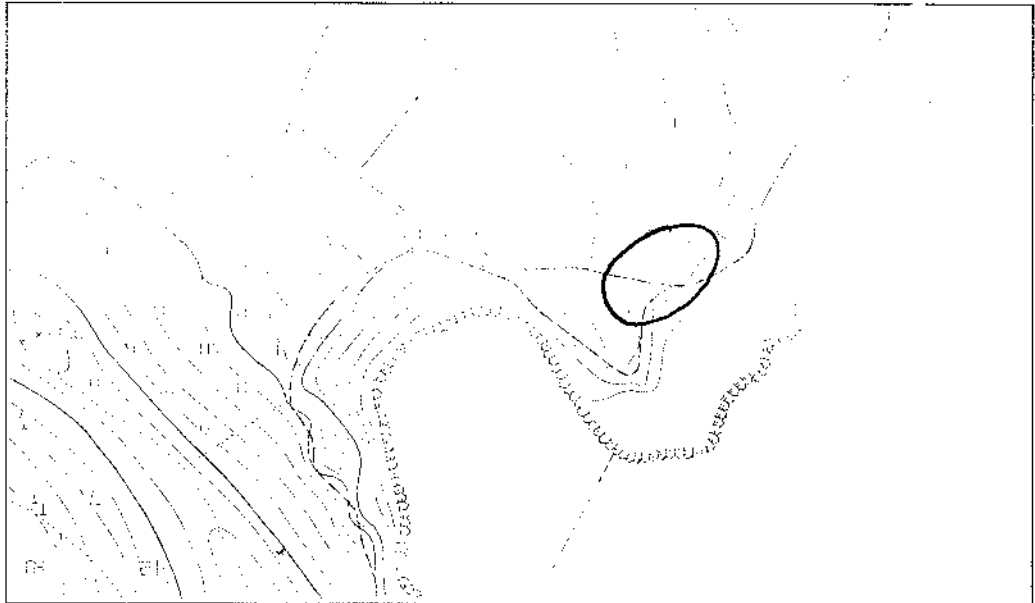
지도 7. 영일동 유물 산포지

영일동 포구 남측 해안에서 收拾된 것과 소머리오름 북측 해안도로에서 수습된 것으로 주거지와와의 관련성은 애매하다. 조선시대말기에서 근대초의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간혹 눈에 띄나 시기적으로 확실한 것을 수습하였다.

① 朝鮮白磁사발片

소머리오름 북측 해안도로변에서 수습한 것이다. 기형은 외반된 굽에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나시 외반되는 것으로 보아 사발편임을 알 수 있다. 회청색으로 나타나는 釉藥은 사발의 내외부에 골고루 시유되고 있으나 두텁고 불규칙하며 기포가 발생했던 흔적이 있다. 胎土는 세밀한 모래가 혼합된 粘土인데 수비가 양호하

여서 기공이나 균열은 없다. 굽은 들린굽을 하고 있으며 모래굽받침을 하였다 <사진①>. 이러한 양상의 도자기는 濟州島 一圓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막그릇으로 사용된 듯하다. 시기적으로는 조선시대인 17~18세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영일동 유물 위치도

② 朝鮮白磁접시片

영일동 포구 서측도로와 해변 사이에서 수습된 것으로 높고 들린굽을 하고 있으며 급격히 외반되는 기벽을 하고 있어서 원래의 기형은 접시인 것 같다. 胎土는 연회색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주 세밀한 모래가 보인다. 수비는 양호하여서 기공이나 균열이 없다. 유약은 회청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접시의 내외부에 골고루 施釉되고 있다. 접시의 중앙부에 굽은 모래비집받침 흔적이 여러 개 나 있다. 모양으로 보아서 일반적인 그릇은 아니고 제기용 접시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③>. 이러한 형태의 기명은 제주도 내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것이며 시기적으로는 조선시대 말기인 19세기말에서 근대초기인 20세기초에 사용된 것이다.

③ 모물사기대접편

영일동 포구 안에서 收拾된 것이다. 직립된 굽은 작고 두툼한데 들린굽이다.

대접의 안면 중앙에 모래비집받침을 했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대접도 모래비집받침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胎土는 백색의 점토인데 수비가 적당히 되어서 자세히 보면 기포가 보인다. 유약은 비색을 띠는 백자유인데 기미줄 모양의 병렬이 많다<사진④⑤>. 이와 같은 모돌사기 대접은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막그릇과 재사용 그릇 등이 있다. 보편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조선시대 말기(19세기말)에서 근대초기(20세기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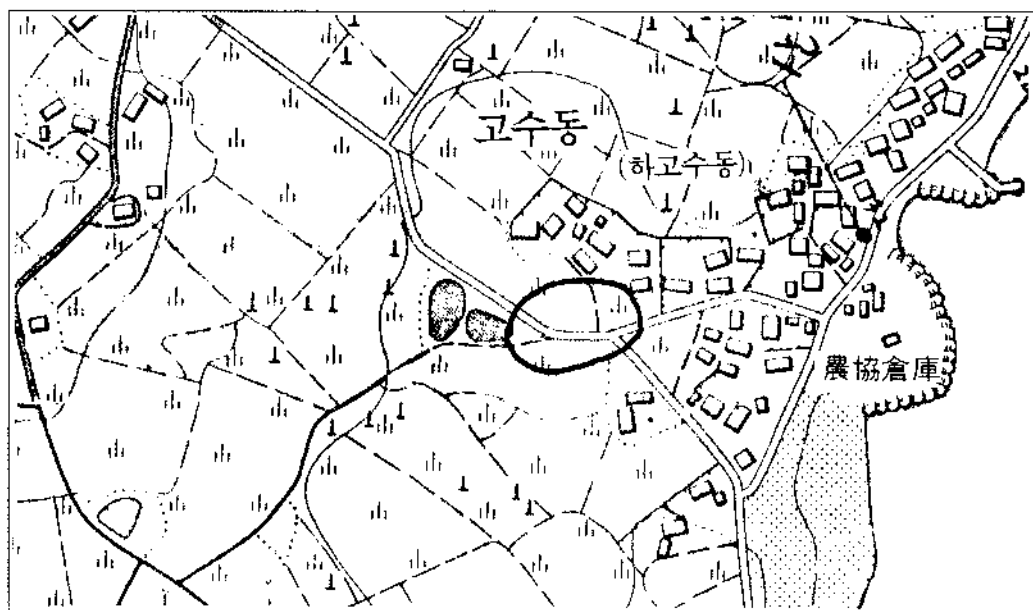


영양농 우들 산뚜지 수습유물

④ 모돌사기편

영일동 포구 해안도로변에서 收拾된 것이다. 조그만 파편으로 전체의 기형을 알 수 없다. 다만 급격히 휘어지는 곡선으로 이뤄지고 있어 종지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胎土는 갈색이 혼합된 미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비는 적당히 이뤄지고 있어서 자세히 보면 세밀한 가공과 균열이 보인다<사진②>. 시기적으로 19세기말기와 20세기 초기에 사용된 그릇류이다.

(3) 하고수동 遺物 散布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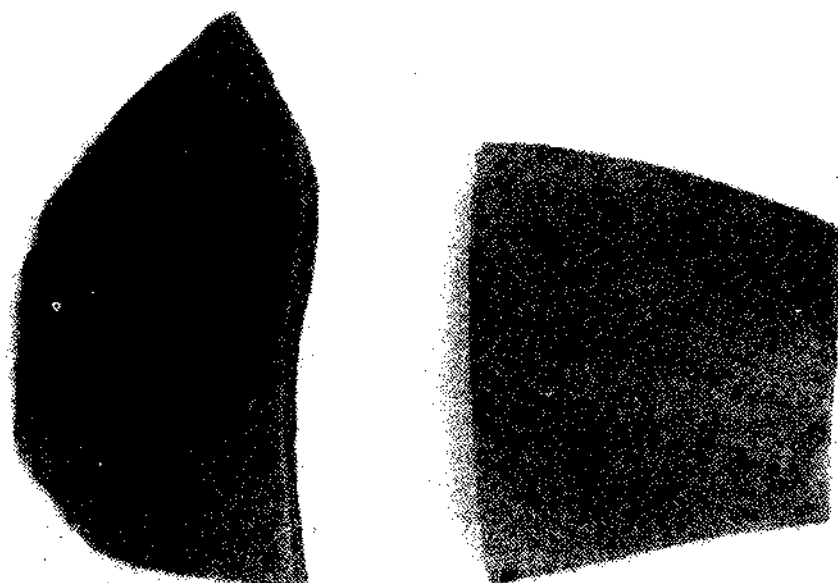
〈지도 8〉 하고수동 유물 산포지

하고수동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물통이 2군데 있고 주변은 경작지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있다. 발견된 유물은 도자기편으로 물통 근처와 경작지에서 收拾된 것이다.

① 朝鮮白磁사발片

구연부만 남아 있는 파편인데 상륜부의 곡선이 급하고 동체부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어서 사발의 구연부로 추정된다. 胎土는 연회색을 하고 있는데 아주 세밀한 모래가 섞여 있다. 수비는 양호한 편이여서 기공이나 균열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유약은 청색을 머금은 회색으로 얇고 골고루 施釉되고 있다. 빙렬은 없으나 그릇의 외면에 간혹 기포가 발생한 흔적이 있다<사진②>. 이러한 양상의 기명은 제주도내의 여러 주거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조선시대후기인 18~19세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하고수동 유물 산포지 수습유물

① 조선백자편

② 조선백자사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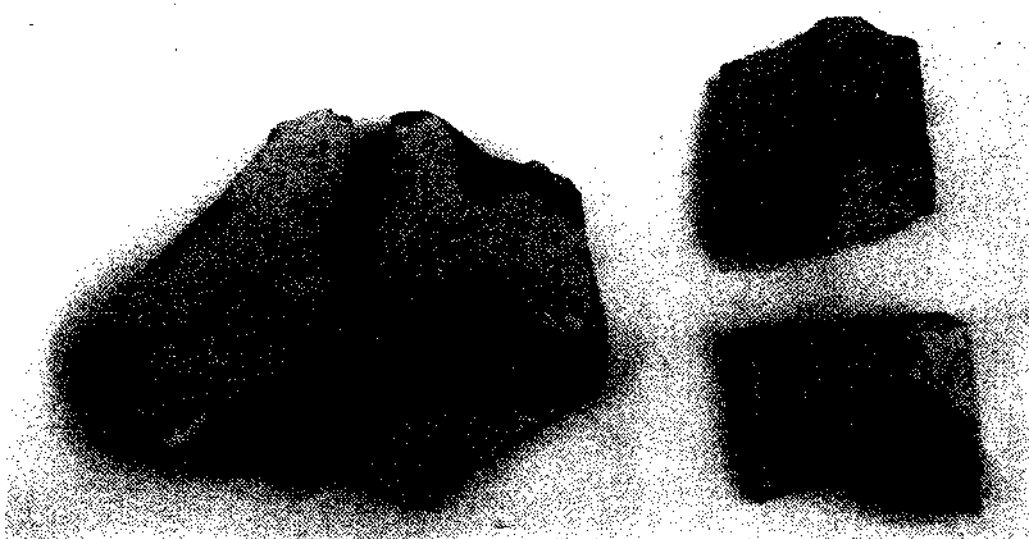
② 朝鮮白磁片

조그만 파편으로 기형을 알기에는 부족하다. 胎土는 세밀한 모래가 섞여있는 연회색의 粘土이다. 수비는 양호하게 된 편이나 자세히 보면 세밀한 기공이 있다. 유약은 청색을 머금은 회색을 하고 있는데 빙렬은 전혀 없고 빛깔도 양호하다<사진①>. 유약이나 胎土의 양상으로 보아 조선후기의 도자기로 판단된다.

(4) 중앙동 遺物 散布地

중앙동에서 주흥동으로 가는 도로의 중간쯤의 우(동)측 경작지에는 도자기들이 간혹 눈에 띈다. 지형은 보편적으로 높낮이가 없으며 자갈 함유량이 적은 편이다. 발견되는 유물은 陶磁器片외 별다른 유물을 찾아볼 수 없고 시기적으로는 조

선시대 후기에서 근대초기의 것들이다.



중앙동 유물 산포지 수습유물

- | | |
|-----------|---------|
| ① 조선청화백자편 | ② 모몰사기편 |
| | ③ 조선백자편 |

① 朝鮮白磁片

釉藥은 기명의 내외부로 골고루 施釉되었으며 굵은 링렬을 동반하고 있다. 색조는 청색을 약간 머금은 백색으로 나타났다. 조그만 파편으로 기형은 알 수 없으나 팔각 정도의 각을 둔 접시 또는 종지로 추정된다. 태토에는 세밀한 모래가 혼합되어 있는데 수비의 상태가 좋아서 기공이나 균열은 없다<사진③>. 시기는 대체적으로 조선조후기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각을 둔 기명은 흔하게 발견되지 않은 귀한 것으로 소중한 기명류에 속한다. 편년은 18~19세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② 朝鮮靑華白磁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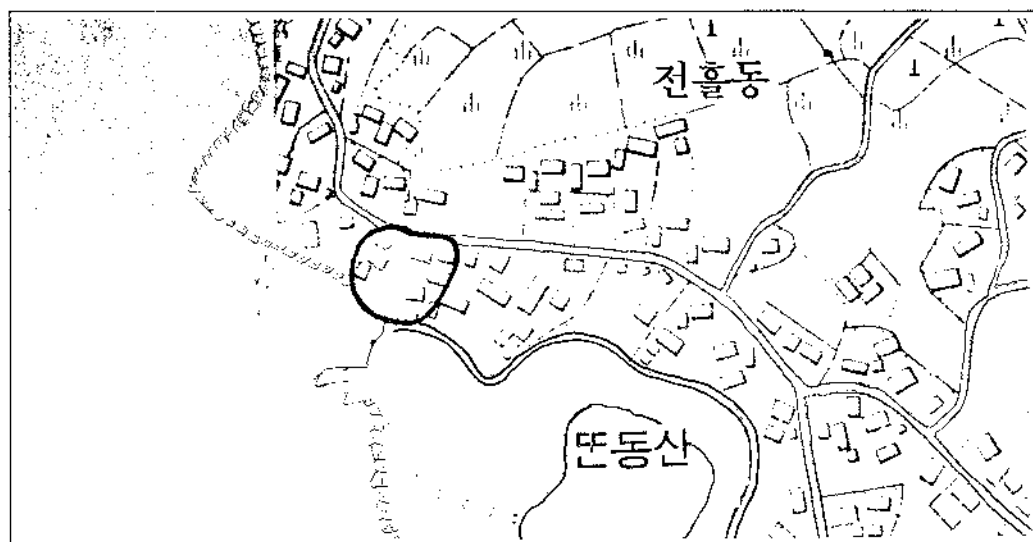
조그만 파편으로 기형은 알 수 없으나 아가리부위가 완만한 곡선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 대접임 가능성이 크다. 태토는 연회색으로 나타나는 바 세밀한 코래

가 혼합되어 있다. 수비의 상태는 양호하여서 기공이나 균열은 눈에 띄지 않는다. 청색으로 나타나는 그림은 기명의 외부에만 있는데 문양은 알 수 없다<사진 ①>. 이러한 양상의 기명류는 조선시대 말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제주도 일원에서도 흔히 출토되는 종류의 기명이다.

③ 모물사기편

연갈색으로 나타나는 胎土는 수비의 상태가 양호하여 기공이나 균열이 없다. 유약은 미색으로 나타났는데 잔 빙렬을 동반하고 있다<사진 ②>. 조그만 파편으로 기형은 알 수 없으나 조선말기에서 근대초기에 제주도에서 다량으로 사용된 모물사기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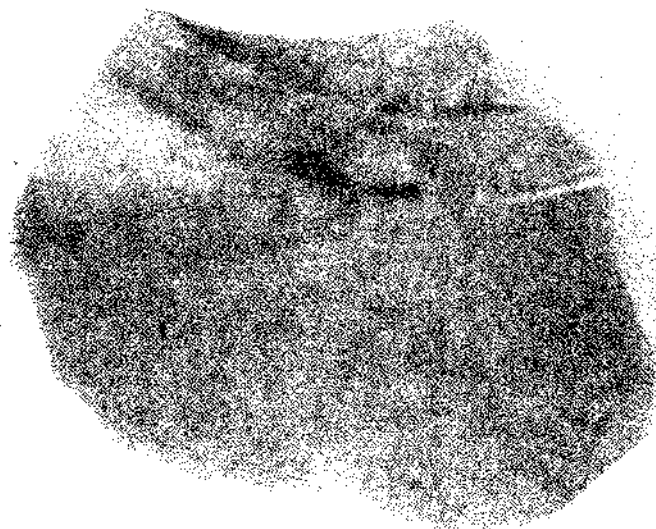
(5) 전흘동 遺物 散布地



〈지도 9〉 전흘동 유물 산포지

전흘동 즉, 상고수동 포구의 축조중인 물양장에서 수습하였는데 도자기편은 1점에 불과하기는 하나 시기적으로 18~19세기의 도자기편으로 언급하여 두고자 한다. 또한 포구로 진입하는 비포장 도로 공사장의 돌무더기 속에서 4점의 7래가 발견되었으나 돌무더기 속에 버려진 것이어서 전부 수습하지 못하고 2점만 수습하여 제주대학교박물관에 기증하였다.

① 朝鮮白磁片



선출동 유물 산포지 수습 조선백자편

조그만 파편으로 전체의 기형을 알 수 없다. 비록는 연회색으로 나타나고 있고 세밀한 모래가 혼입되어 있다. 수습의 상태는 양호하여서 기공이나 균열 등을 찾아 볼 수 없다. 유약은 비취색으로 나타나고 있고 기형의 내외면에 두껍고 불규칙하게 사우되어 있으며 불로 세세히 빳털이 있다. 이러한 양상의 기형은 대체적으로 조선시대 후기에 나타나며 제주도 내에서 시기적으로 같은 유적에서도 출토된다. 편년은 18~19세기의 것으로 유추된다.

② ㄱ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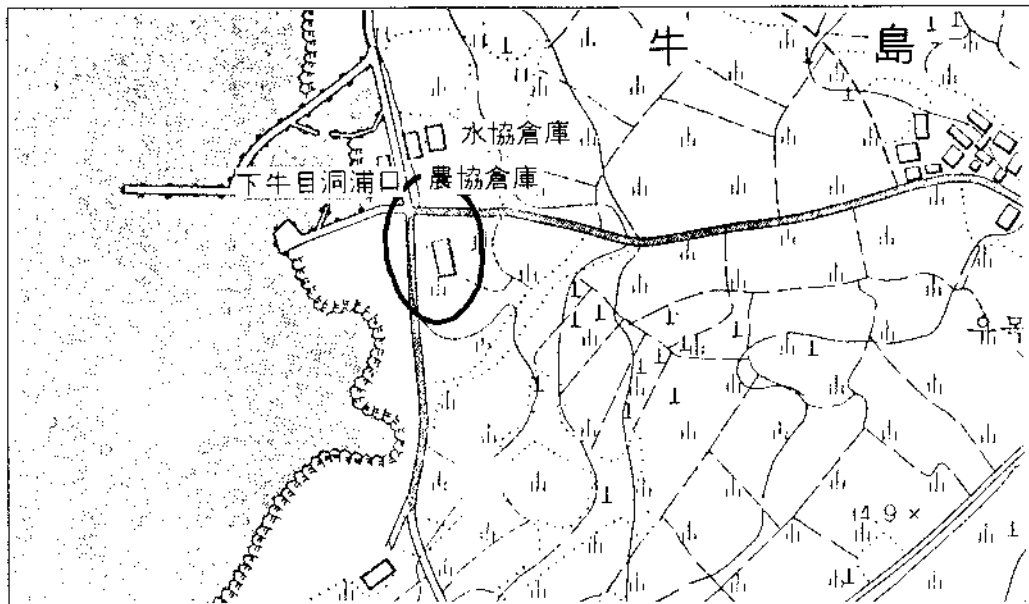
완루함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윗면에서 보면 알형을 하고 있다. ㄱ래의 윗돌인 윗착으로 밑면 가운데는 알착과 연결하는 구멍이 있고 중앙은 조금 비껴서는 꼭 붙어 들어가는 주입구가 사각형으로 뚫어져 있다. 측면으로는 손잡이인 ㄱ랫조록을 끼워 물리게 된 사각형 모양이 구멍이 있다. 지름은 41.0cm이고 높이는 11.0cm이다. 알착은 수습할 수 없었다.

③ ㄱ래-2

ㄱ래-1과 같은 장소에서 수습하였는데 꼭꼭한 알착 너를 뚫은 알착은 없

다. 지름은 41.0cm 이고 높이는 9.0cm이다.

(6) 하우목동 遺物 散布地



〈지도 10〉 하우목동 유물 산포지

상우목동에서 하우목동 포구로 진입하는 비포장 도로변에서 수습한 도자기편으로 조선말기의 근대중기의 것이 있다.

① 朝鮮靑華白磁片

청색을 머금은 백색의 유약은 기명의 내외부로 골고루 施釉되고 있는데 잔잔한 氷裂을 동반하고 있다. 胎土는 연갈색으로 세밀한 모래를 혼합하고 있는데 수비의 상태가 양호하여서 기공이나 균열이 눈에 띄지 않는다. 굽은 파손되어 형태는 알 수 없으나 부분적으로 모래가 나타나고 있어서 모래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코발트계를 사용하여서 청색으로 나타나는 이른바 靑華무늬는 기명의 안면 중상과 벽에 그려졌는데 문양의 형태는 알 수 없다<사진③⑤>. 이러한 조선청화 백자는 주로 조선시대후기에 사용된 것으로 편년적으로는 19세기경에 해당된다고 思料된다.



하우목동 유물산포지 수습유물

- | | | |
|---------|-----------|-----------|
| ① 모몰사기편 | ② 모몰사기편 | ③ 조선청화백자편 |
| ④ 백자편 | ⑤ 조선청화백자편 | |

② 모몰사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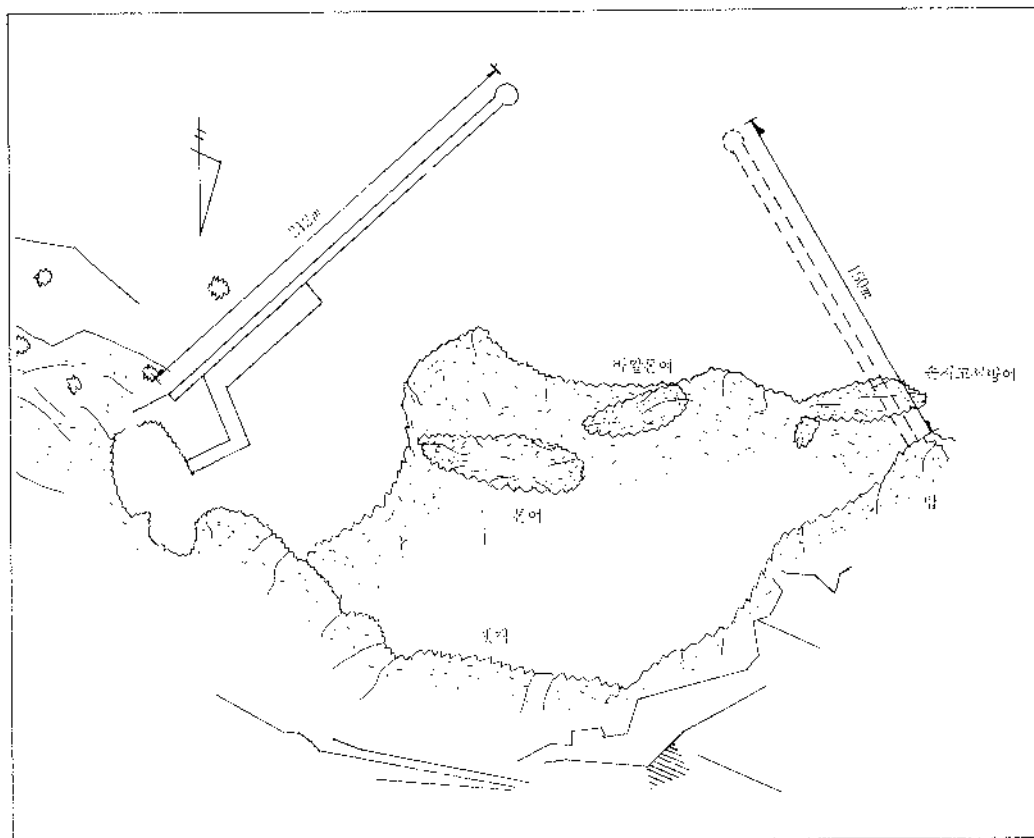
胎土는 연갈색으로 나타나며 세밀한 모래를 혼합하고 있다. 수비의 상태는 양호하여서 기공이나 잡물이 눈에 띄지 않는다. 유약은 청색을 머금은 연회색으로 기명의 내외부에 골고루 시유되고 있는데 잔 균열이 있다. 조그만 파편으로 전체의 기형은 유추하기 힘들다<사진①②>. 시기적으로는 조선시대말기에서 근대초기에 사용했던 陶磁器로 추정된다.

③ 白磁片

釉藥은 백색으로 나타나고 있고 기명의 내외부로 시유되고 있는데 방렬이나 잡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胎土는 연회색으로 수비의 상태는 양호하여 기공이나 균열은 전혀 없다. 구연부이긴 하나 작은 파편으로 기형을 유추하기는 힘들다. <사진④>. 보편적인 시기는 근대초기에서 중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3. 浦 口

1) 동천진동 포구(우도항)



동천진동 포구 평면도

동천진동의 남쪽 해안에 위치한 우도항은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항과 마주하고 있어서 우도와 성산항을 연결하는 주요 통로이다. 남서쪽으로 물양장과 防波堤가 축조되어 있는데 물양장은 길이 99m 정도이고 防波堤는 길이 212m이다. 포구안에는 '곶', '바깥곶', '손지고서방여' 등의 암반이 있으며 안쪽으로 '셋개'라고 하여서 포구가 형성되기 전에 조그만 배들을 정박시키던 곳이 있다.

포구의 서쪽으로 길게 바다로 뻗은 암반이 서쪽으로 오는 해풍을 막아주고 있다. 동남쪽으로 방파제가 길게 이뤄질 전망이어서 앞으로 더욱 주요 포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서천진동 포구 전경

서천진동 서쪽 해안에 위치한 포구는 사라호태풍(1959)의 피해가 발생한 후 점차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포구로서의 역할을 잃고 있는 실정에 있다. 잔존한 선착장은 46m로 서쪽으로 향하여 길게 나 있고 해안쪽으로는 너비 12m의 불양장이 축조되어 있다. 그러나 선박의 입출항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 사라호 태풍이 있기 전에는 우도에서는 규모가 큰 포구로 많은 선박들이 있었다. 당시는 선착장이 지금의 포구 남측의 암반에서 북쪽으로 길게 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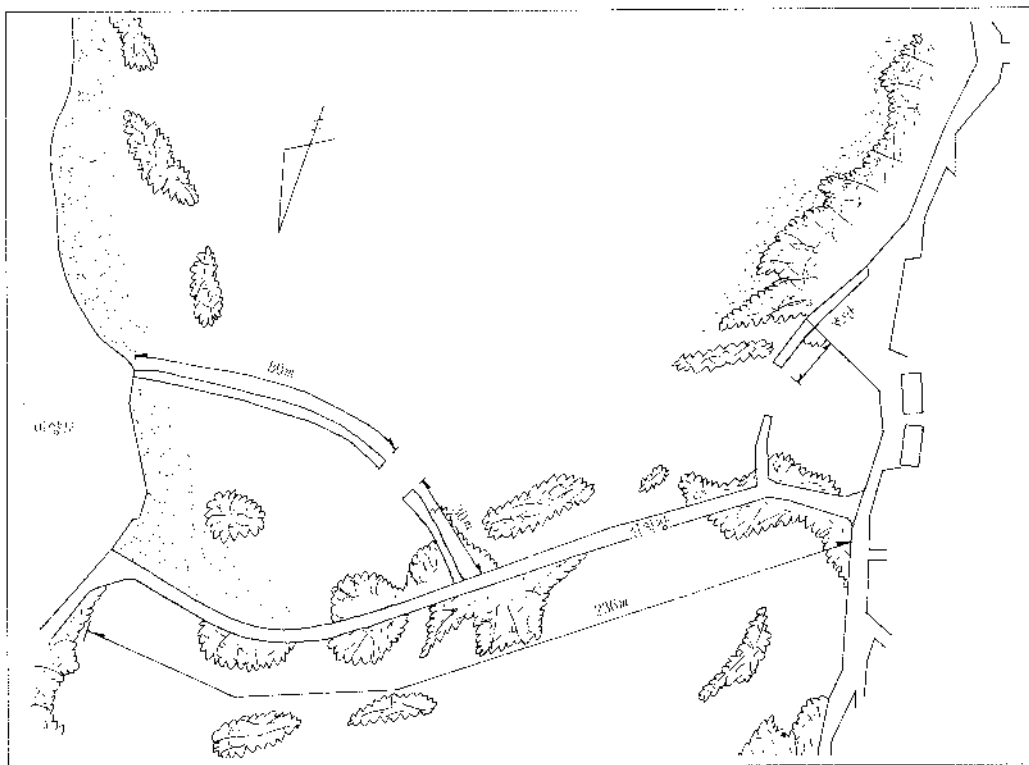
주변 상황으로는 북측으로 '드렁코지'가 있고 남측으로는 '그브실내기'라는 바나로 돌출된 지점이 있어 양쪽으로 파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포구 주변으로는 포구의 앞쪽으로 '방안여'가 있다. 선착장 너머 북쪽에는 '판굽이여'가 있어 간접적인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서천진동 포구는 이미 기능이 상당히 약해져 있고 요즘은 선박의 왕래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선착장이 포구의 너비를 좁게하여 축조되었고 포구안의 깊이가 바닥인 암반과 가까워 포구로서의 역할은 미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우목동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포구는 남측으로 '녹성이코지'라고 불리는 암반이 바다로 길게 뻗어 있다. 북측으로는 '모들여'라고 불리는 암반이 바다로 뿔뿔이 떨어져 있어서 자연적으로도 포구가 형성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포구의 축조는 자연적인 암반인 '종달이할망여', '진여', '모들여'로 길게 이어지는 곳을 이용하였다. 기준선착장이 남서쪽으로 약 84m 정도가 되고 42m 지점에서 서쪽 방향으로 길이 40m의 선착장이 있다. 이 선착장의 12m 정도의 지점에서 다시 남서쪽을 향하여 길이 42m의 선착장을 축조하였으며 끝에서 너비 26m 정도의 물양장이 만들어졌다. 기준이 되는 선착장에서 서쪽을 향하여 116m 정도의 방파제가 있는데 30m 지점에서 너비 20m의 물양장이 축조되었다.

포구의 중앙부에는 '진여', '방안여', '생반여'가 있다. 전체적으로 규모를 갖춘 포구라고 판단되며 선박의 왕래도 잘 이뤄지고 있다.

4) 비양동 포구



비양동 포구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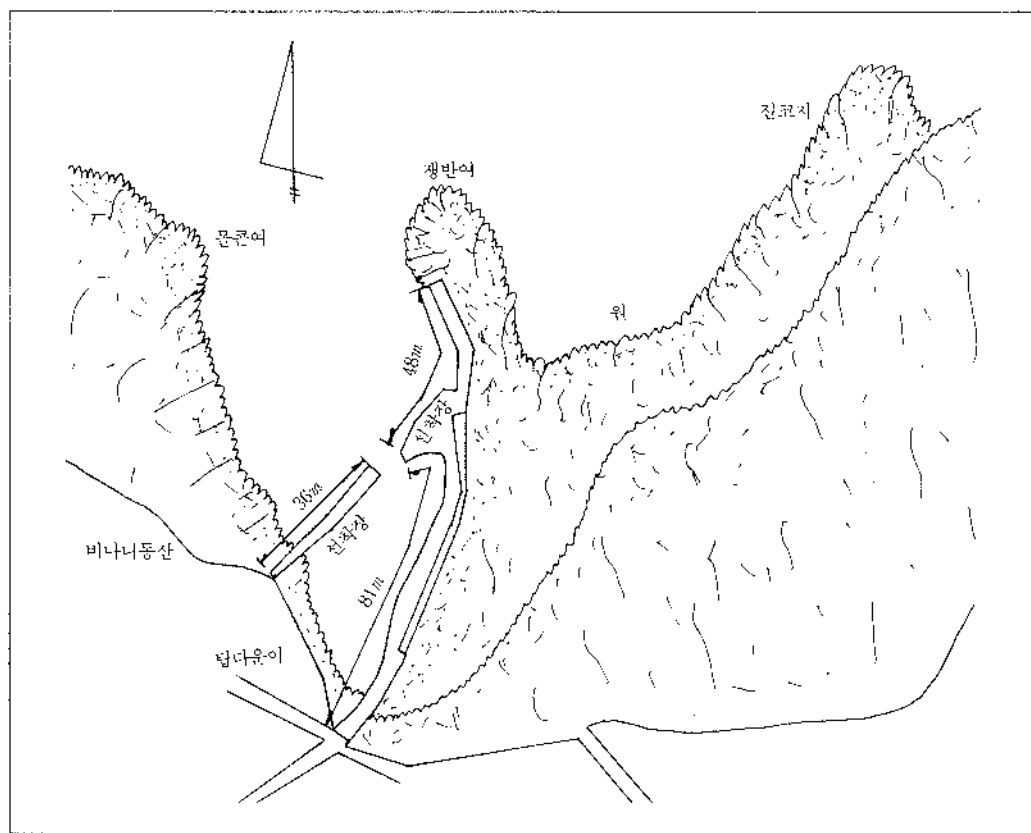
비양동 포구 전경

비양동 북쪽 해안에 위치한 포구는 그 양상이 특이하다. 비양동에서 동측 방향에 비양도라는 섬이 하나 있는데 중간중간에 암반들이 있다. 이 암반의 위로 선착장을 길게 쌓아서 비양도와 연결한 다음 비양동쪽의 남쪽으로 길이 15m의 선착장과 북쪽으로 길이 22m의 선착장을 쌓고 타우를 위주로 하여 사용되었는데 선박들이 점차 커짐에 따라서 비양도쪽으로 별도의 선착장을 둥그스름하게 쌓고 또 하나의 포구를 만들었다.

근처가 모두 모래와 암반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포구의 깊이가 낮게 보인다. 그러나 동, 서, 북쪽이 자연적으로 둘러쳐져 있어서 해풍으로 인한 피해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점이 있다.

5) 영일동 포구

영일동 북측에 위치한 포구는 동쪽으로 '쟁반여'라는 바다로 길게 돌출된 암반과 서쪽으로 나 있는 '버나나동산'과 '물코여'라는 암반을 적당히 이용하여 형성되었다. '쟁반여'편으로는 길이 129m의 선착장이 있고 반대편으로는 36m의 선착장이 있는데 그 규모가 미약하여 포구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으며 따라서 선



▲ 영일동 포구 평면도

영일동 포구 전경 ▼



$\mathbb{R}^n$

Figure 1. The structure of the proposed model.

97 | 8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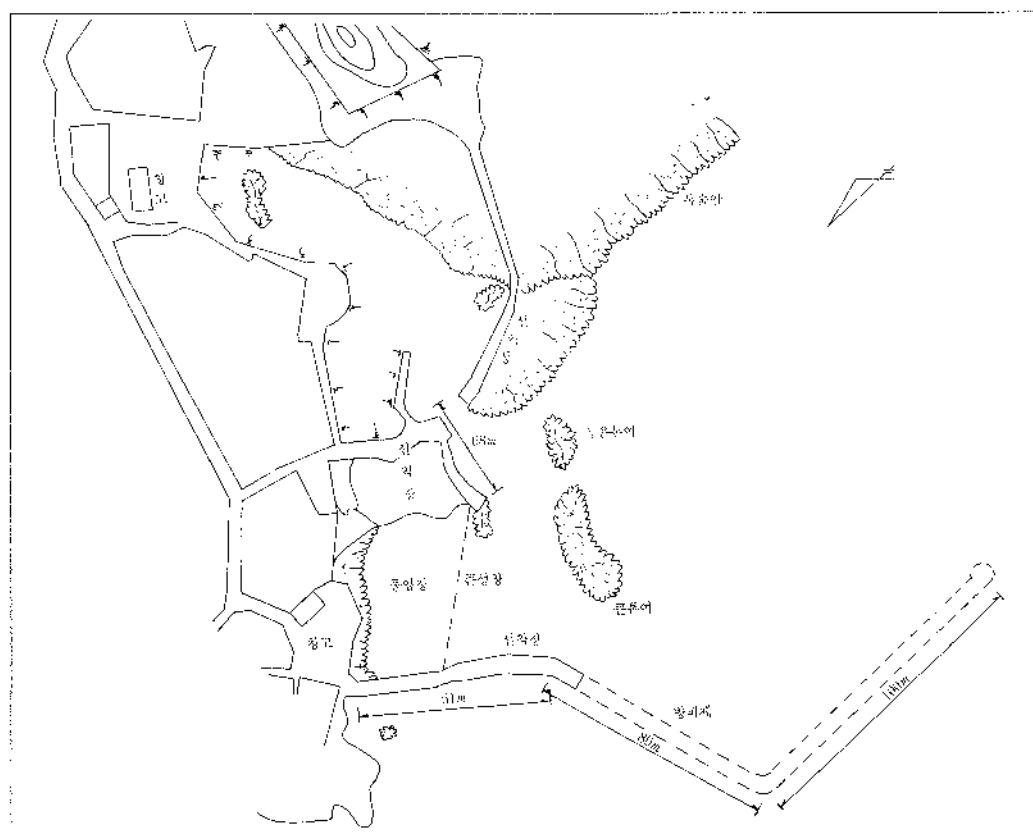
조항호 표규 저격 ■

100 H 100 V



주흥동 마을 서쪽 해안에 위치한 포구는 남측으로 '당알코지'라는 바다로 뻗은 암반과 북측에 '할망알코지'를 기준으로 하여 이뤄지고 있다. '할망당코지'로는 길이 약 80m의 선착장이 ㄱ자로 꺾여 있으며 북측으로는 '할망알코지'에서 ㄴ자 형식으로 선착장이 이뤄지고 있다. 포구의 입구에는 '지방여'라고 하는 200평방미터의 수중암이 있고 안쪽에도 100평방미터의 수중암이 있다. 대체적으로 선박의 왕래가 좋으며 약 4~5척은 정박하고 있다.

7) 전흥동 포구



전흥동 포구 평면도

전흥동 서쪽 해안에 위치해 있는 포구는 북측의 선착장이 중심이 되어 남서쪽으로 형성되고 있다. 남측으로 '독순암'이라고 불리는 암반이 북쪽을 향해 길게 나 있고 이 암반을 따라 90m의 선착장이 만들어졌다. 북측으로는 동쪽의 바다를

향하여 길이 61m의 선착장이 축조되었고 길이 10m의 방파제가 만들어진 상태이다. 포구 가운데 부분은 Y자형식으로 선착장이 축조된 상태인데 북측의 선착장과 물양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포구 입구에는 '작은본여'라고 하는 100평방미터의 수중암과 '큰본여'라고 하는 700평방미터의 수중암이 있다. 보편적으로 선박의 왕래는 순조로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략 4~5척이 정박하고 있는 상태이다.



전흘동 포구 전경

8) 하고수동 포구

하고수동 남측 해안에 위치해 있는 포구는 동측으로 진여라고 불리는 암반을 이용하여 축조된 선착장과 방파제가 중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편으로 호안시설과 선착장을 축조해 있다. 호안과 선착장은 암반을 이용하다 보니 여러 갈래로 되어 복잡한 듯한 느낌을 준다. 이 지점에서 서쪽으로 '동그르단여'라고 불리는 암반이 바다로 둥그스름하게 형성되고 있는데 이곳에 길이 32m의 로안과 너비 17m의 선착장이 있다.

중심이 되는 방파제의 동측으로 '웃앓은코지'라는 암반이 바다로 뻗어서 포구를 보호하듯 이뤄지고 있고 서측으로는 '들렁머리담동산'이라고 하는 암반이 바다로 돌출되어 있어서 동쪽과 서쪽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적절히 막고 있는 형상이다.



4. 기 타

1) 망등산

우도 동남쪽에는 해발 132.5m의 큰섬머리, 해발 98.5m의 작은섬머리라고 불리는 오름이 있다. 후자를 망등산이라고 하는데 이는 바다의 동태를 살피다가 왜적이 침입하게 되면 연기나 불꽃으로 신호하던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상호관계는 남쪽으로는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봉과 서쪽으로는 북제주군 종달리의 지미봉이다. 현지조사를 하였으나 남아있는 흔적은 없었다.

2) 포젓동산

우도 사람들이 따올제(酬祭)를 올리던 곳으로 속칭, ‘게우마루’, ‘게우바루’라고 한다. 포제일은 배해 정원 초 정해일로 정하여 이뤄졌으나 1870년경에 누군가가 入葬하는 바람에 부정한 곳이 되어버려서 각 동별로 행해졌다. 지금은 남아있는 유물이나 시설을 찾아볼 수 없다.

3) 외무덤

비양동과 영일동 사이에는 나즈막한 구릉이 있다. 이곳을 일컬어 ‘외무덤’, ‘이무덤’, ‘예무덤’, ‘의무덤’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이 구릉에는 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① 전설에 의하면 왜적들이 침입하여 왔다가 우도 사람들과 싸워서 죽은 사체가 묻힌 곳이다.

② 일본 상선들이 근해를 항해하다가 폭풍을 만나 배가 난파되고 사체가 떠 밀려오면 우도사람들이 묻은 곳이다.

③ 일본인 사체를 묻은 곳이다.

④ 비양동과 영일동 사이의 해변에 사체들이 많이 올라 왔다. 섬 사람들은 사체를 모두 묻어 놓았는데 잘 묻어지지 않아서 쉽게 노출되었다.

⑤ 우도의 소년 장수가 임진왜란 당시 조선과 싸우다가 죽으니 묻은 곳이다. (일본 NIIK)

아직까지 이곳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발견되어 있지 않다.

현기조사를 1992년 11월 17일~18일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앞서 내용들을 뒷받침할만한 것은 찾을 수 없었다. 구릉은 바다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있고 해발 20m 정도이고 길이는 동서로 약 100m 정도이다. 주변은 대부분 경작지이나 동산부분은 작고 낮은 무덤들이 많다. 어떠한 것은 진물로 주위를 두르고 봉분을 만들고 있다. 간혹 조선시대 말기에서 근대초기의 노자기편이 눈에 띄나 작고 소량이어서 수습할 수 없었다.

구전조사는 대부분 앞의 내용과 일치되어 수록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을 바다의 경계를 조사하는 도중에서 비양동 마을 바다가 영일동 쪽으로 많이 나가 있었다. 그것은 시체가 많이 떠오르는 속칭 ‘너른께’ 근처의 해안 때문이다. 이곳에는 유난히 시체가 많이 떠오르는 곳이라서 비양동과 영일동에서 관리를 안 하려고 했는데 떠오르는 시체가 보기 싫으므로 주로 비양동 사람들이 했다. 그래서 바다도 관리하는 마을인 비양동 것이 된 셈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외무덤 동산 북동쪽 해변에서 시체가 많이 떠오른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며, 그 시체들은 가까운 외무덤동산에 묻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시체들이 일본인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고 다만 타지방에서 흘러 들어온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의 ①은 그럴 수도 있었지만 정확한 자료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②, ③, ④는 신빙성이 있으나 모두 확인 인지는 의문이 있으며, ⑤는 전혀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위에서 나타나는 ‘외’, ‘의’, ‘왜’, ‘이’는 보편적으로 ‘왜(倭)’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나 ‘외(外)’와 ‘이(異)’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제 4 절 結

牛島面에서 나타나는 遺跡과 遺物은 支石墓와 돌도끼, 몽돌 등으로 미뤄 볼 때 初期鐵器時代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朝鮮時代 後期인 18세기까지 어떠한 遺跡이나 遺物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서 18세기 동안 空白이 있다. 이

는 先史時代에는 少數의 사람들이 짧은 기간을 寄居했던 것으로 理解되며 본격적으로 住居形態를 갖추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朝鮮時代 後期인 18세기 경으로 봐야 할 것이다.

防邪塔 조사에서 할망과 하르방으로 표시됨은 곧 男女의 일컬음이며 陰陽을 칭하는 것이기도 하여서 防邪塔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思料된다.

支石墓에 관해서는 근처에서 관련된 遺物이 없어서 불확실한 면이 있다. 이는 정확한 調査가 실시되어 밝혀지야 할 課題이다.

보편적으로 遺跡이나 遺物이 많이 나타나는 편은 아니나 종류에 있어서는 遺跡으로 望臺, 放邪塔, 浦口, 당, 遺物散布地, 집터, 물통 등으로 多樣的 편이며 望臺와 같은 遺跡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重要하다고 判斷된다. 遺物로는 鐵器時代에 속하는 돌도끼나 동돌이 확인됨으로써 濟州島의 先史時代의 領域이 마라도나 가파도에 이어 附屬된 섬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立證시켜 주고 있는 것이라 思料된다.

